

第244回國會
(臨時會·閉會中)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選舉法小委員會)

第 7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1月29日(木)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건의(계속)

審査된案件

(11시28분 개의)

○**천정배 위원** 선거법소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오늘의 운영은 어떻게 할까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지금 대충 다 합의가 됐고 미합의사항은 정리를 했고,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된 것은 미합의된 대로 유인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는데 그전에 지금 인터넷신문협회의 회장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인터넷실명제에 관해서 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시는 게 낫겠습니까.

○**천정배 위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李昌浩 회장님이신가요?

○**參考人 李昌浩** 예.

○**천정배 위원**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李 회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희룡 위원** 반대성명을 내셨습니다.

○**천정배 위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지요?

○**參考人 李昌浩** 예.

○**천정배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參考人 李昌浩** 일단 저희 협회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자서명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실명제처럼 토론을 제한하는 요인보다 오히려 토론

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찬반토론이나 정치참여도 제가 알기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더 확장해서 상시 인터넷의와 정치참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명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회 의견을 전달해 드린 바 있듯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선거참여활동들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인터넷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돈 드는 선거를 없애고 국민들이 정치활동에 좀더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정치가들이 자기활동들을 좀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정치참여의 장이 이루어지는 참여정치를 만드는 게 하나의 방향이라고 본다면 인터넷처럼 좋은 대안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인터넷으로 하면 직접민주주의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만큼 많이 열려 있고 국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자서명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참여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개진이나 이런 문제가 여기

서도 논의됐지만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정도의 장치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실명제가 아니고 자율적인 실명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런 것들이 수용되고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정배 위원** 혹시 말씀 도중에 ‘자율적인 실명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参考人 李昌浩** 예.

○**천정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参考人 李昌浩**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원등록제……

○**천정배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원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원희룡 위원** 인터넷언론협회의 입장은 저희들이 이미 성명서를 잘 봤고요, 우선 오해를 풀어 주실 것은 전자서명에 의한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전제를 하고서 강력한 반대성명을 내셨더라고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현재 논의의 단계는 **李昌浩**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흑색선전 특히 가명 내지는 허무인 명의의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금전사기의 경우에는 사이버수사대가 30명씩 몇 달 동안 추적해서 잡아내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자가 있으니까 수사대가 달라붙지만 사실 선거기간에 폭주하는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의 본질적인 공간의 자유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비용이 적고 합리적이고 스스로의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사실 다른 나라의 예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개방적인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찬반보다는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학계나 언론계에서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전자서명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허무인 명의의 회원 가입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방치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청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지금 신용정보 관련

법에 의해서 게임사이트라든가 구체적인 카드나 전자화폐에 의한 지불을 동반하는 서비스들은 신용정보기관과 신용정보 조희서비스 업무위탁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이 실명인지,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실명과 맞는지를 금융기관에 등록된 사람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조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명으로 등록됐다든지 실명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회원등록 또는 게임의 유료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 수준으로 법제화해서 의무화한다면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라든지 인터넷의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전자서명제는 과도하다는 것이고 지금처럼 회원등록만 하면 있지도 않은 이름과 실명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생성프로그램에 의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고서 마음대로 드나드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실제 선관위나 수사기관이 그 IP와 그 이름을 가지고 흑색선전을 선거기간 내에 추적해서 신속하게 막아내고 민·형사책임을 묻기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参考人 李昌浩** 일단 빌링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전자서명·빌링 쪽을 담당하는 기자가 나와 있는데 빌링은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参考人 김현아** 지금 원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전자서명 공인인증 쪽의 얘기하고는 무관한 문제이고요. 지금 현재 신용정보 관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확산되어 있거나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업체 같은 경우 휴대폰결제는 이동전화업체하고 DB가 연계되어서 이동전화번호의 가입자나 아니냐가 인증프로세스로 이용되는 것이지 한국신용정보라든지 이런 기관의 DB하고 전부 다 연동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그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원 위원님께서도 전자서명공인인증제도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찬성하는 바이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각 사이트별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희룡 위원 역시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회원 등록프로그램 문제는 전혀 가공의 인물,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명·차명까지 차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아이디를 갖더라도 수사의 단서조차 되지 않는 그런 가명예다가 주민등록생성프로그램을 가지고 영터리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차단, 그런 글에 대해서 그것이 가명이라는 이유로 삭제해 바로 해 버린다면지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장치는 해 놔야 선거라는, 인터넷공간이라고 공명선거를 해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후보자들은 흑색선전을 하면 당선돼도 자동적으로 의원직 박탈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흑색선전을 하면 아주 엄한 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온라인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적으로 추적할 수 없게끔 해 놓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뭐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동전화 가입회원들에 대해서는 빌링시스템을 통한 신용정보조회, 사실 저희는 지불능력에 관한 신용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여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보니까 대상자의 본인 여부에 대해서 첫 번째 확인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로는 안 되겠지만 이와 유사한, 그래서 본인의 실명 여부와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여부만 가리는 정도의 서비스를 현재 신용정보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이것은 선관위가 감독하도록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최소비용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정도를, 저희는 전부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보도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랭키닷컴에서 상위 50위 정도의 접속사이트만 해 놓으면 저희의 실질적인 취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터넷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글을 올리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충돌되는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나름대로의 규율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김현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검토와 고민 끝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인터넷의 본질을 침해한다든가 비용적인 문제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급되어 있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차피 새로 도입하는 제도이니까 도입되어 있을 리가 없고 저희가 착안하는 것은 일단 전 인구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미 빌링시스템에 의해서 수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실제 주민등록번호 여부, 실명 여부를 상거래의 경우에 확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위 50개 정도의 인터넷사이트라고 하면, 특히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들 것도 없고 만약에 유료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지만 상위 50위 정도의 순위를 달성하는 인터넷사이트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련되는 부가비용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비용이 문제라면 법률에 의해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시민 위원 제가 원 위원님의 질의를 보충하면서 실무적으로 고민해 보자고요.

아이뉴스24닷컴의 대표로 계신데 아이뉴스24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参考人 李昌浩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러면 만약 아이뉴스24가 보는 것은 자유롭더라도 글을 남기는 사람은 반드시 회원등록을 해서 하게 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면 직접 들어가는 금전비용과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잃게 되는 어떤 것을 포함해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参考人 李昌浩 금전적이지 않은 것들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빌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러면 비금전적 비용이나 이로 인한 손실이 있나요?

○参考人 李昌浩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첫째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손실이겠지요.

○**유시민 위원** 그다음 단계로서 회원제로 한 상태에서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것이 신용정보회사들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 회원등록제에서 신용정보회사와 연계되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일치 여부 확인이 가능한 회원제로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까?

○**参考人 李昌浩** 별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유시민 위원**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든다는 것이지요?

○**参考人 李昌浩** 예.

○**유시민 위원** 그다음에 빌링시스템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参考人 金현아** 예, 맞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다음에 만약 회원등록에다 플러스해서 전자서명인증제를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받은 것으로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만 한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参考人 李昌浩** 예.

○**유시민 위원** 아이뉴스24가 그와 같은 전자서명제를 도입할 경우에 아이뉴스24의 영업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니까?

○**参考人 李昌浩** 글 쓰는 것에 있어서 전자서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영업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영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광고 문제이거든요.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영업에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시스템 설치비용도 최소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할 이유는 없지요.

○**유시민 위원**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사이트 50위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신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 중에서 작년에 당기후자를 본 기업이 있습니까?

○**参考人 李昌浩** 소폭 후자나 소폭 적자 정도의 수준인데 굉장히 좋아지기는 했지만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유시민 위원** 후자를 본 기업이 많습니까?

○**参考人 李昌浩** 많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요.

○**원희룡 위원** 보완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언론에 선거와 무관한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등록제라든지 관여할 이유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인터넷실명제는 범개협에서도 다 합의가 됐고 방법을 놓고 규정이 없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인기 50위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자기 의견을 게시할 때는 실명확인이나 회원가입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것을 올릴 때는 회원가입의 필요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선거에 관한 기사를 회원가입 없이 했을 때는 바로 서버관리자가 삭제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올리려면 선거법에 의해서 회원가입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정도 안내를 달고 선거에 대한 의견을 달려면 허무인이 아닌 뭔가 실제 인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갖고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다면 다른 영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언론이 흑색선전의 장이 된다면, 물론 이런 것이 나중에 영업에 도움이 되는지 장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끌어들이지는 관심이라든가 접속자는 포기해야 되지만 대신 다른 접속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급적이면 적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参考人 李昌浩** 궁극적으로 보면 정책의 문제, 생각의 문제로 가는 것인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관련된 의견은 신용정보에 의해서 하고 아닌 것은 푸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고요.

그리고 선거에 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자가 들어가면 실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자가 들어가면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야 되는 것인지, '정치'자가 안 들어가는 글을 쓰는 사람은 그냥 써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규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왜 정책적인 문제라고 판단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가명으로 쓰든 실명으로 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비방이나 흑색선전이나 거짓말을 쓰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조회에 의한 실명을 쓰도록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반 회원등록을 하더라도, 설사 회원등록을 아예 안 하더라도 그 사이트 운영자가 제대로 검열을 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아니면 진짜 자율적으로 그런 글이 올라오면 바로 삭제하는 체제가 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원희룡 위원 그것이 됐으면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겠지요.

○参考人 李昌浩 저희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밀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일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공존하는 것인데 100% 부정적인 측면을 죽이고 긍정적인 측면만 가져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효율성을 어떻게 기준할 것이냐, 저는 단순 회원등록만 하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 인터넷 신문도 공익언론기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그런 것을 잘 검열해서 정리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다는 것이지요. 참여를 해치지도 않으면서 공정하게 문제가 생길 소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영세 위원 가명·차명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비방적이고 악의적이냐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가명이라든가 차명으로 자기 자신이 노출이 안 될 경우에 마음 놓고 비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서는 삭제권한도 주어지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삭제하면 됐지 될 실명제까지 요구하느냐, 오히려 실명제를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시지만 선거나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글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는데 과연 웹사이트 운영자가 일일이 다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参考人 李昌浩 당연합니다.

○권영세 위원 제가 보더라도 욕설이나 이런 것은 삭제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임의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아주 저질적인 욕설이 나오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이론상으로는 이틀이나 일주일, 한 달이 지

난 뒤에 따져보면 색출해서 다 지울 수가 있겠지만 이미 그때는 피해를 다 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의 인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권리구제의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신용정보기관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동통신회사의 데이터베이스와 전혀 연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원등록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원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김개똥’이라고 써 놓고……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알고리즘을 파악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알고리즘과 다른 것을 스크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것을 깨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생성 알고리즘 대로 주민등록을 생성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경우 회원등록제는 뭐하러 합니까?

지금 회장님께서 토론을 활성화하고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어느 보도를 보니까 방문숫자가 많은 사이트를 따져서 순위를 매겼더니 미국이 1등으로 40% 가량을 점하고 중국이 2등으로 이십몇 %이고 우리가 3등으로 십몇 %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참여가 강조되는 것은 물론 좋은데, 회장님도 부작용을 얘기하셨지요? 부작용은 틀림없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자율적인 실명제가 부작용에 대한 방지수단이 되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태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약에도 사이드 이펙트(side effec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만들었을 때 또 그 수단의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전자서명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으면서 그 자체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자율적인 실명제는 대안이 되지 않아요. 자율적인 실명제 가지고 무슨 스크린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희룡 위원 회장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인터넷 언론사의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인터넷 세대는 간섭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이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최소한의 회원인증시스템 정도는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지 불필요한 규제로 보여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선의의 네티즌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李昌浩 회장님께서도 인터넷 현실만 아시지 선거 현실은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아무튼 직·간접 선거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기간에 딱 돌입되면 사이트 공격부대가 뜹니다. 이 사람들은 고정 IP를 안 갖습니다. 시간대별로 PC방을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욕설을 하느냐? 천만에요. 아주 세련된 내용을 가지고 교묘한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상대방을 흠집 냅니다.

저희가 볼 때 정당이나 후보자 사이트에는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서버관리를 자기네가 하고 있으니까 지우든지 방어를 하든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문제는 네티즌들이 보통 접속하는 인기 사이트인데 30대라든지 50대라든지 100대라든지 이것을 어디로 제한할 것이냐 이것은 둘째 문제로 치고요. 이런 경우 신문에 실리면 일단 독자들이 진실로 믿듯이 인터넷에 상당히 그럴 듯한 내용으로 실리고 리플이 좀 달리고 조회숫자를 좀 늘리고 추천숫자를 클릭해서 올려놓으면 이것이 악용되는데, 금융사기 같으면 자기가 클릭을 안 하면 그만이니까 시간을 두고 수사를 해도 되지만 선거라는 것은 전부 입소문에 의해서 순간에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종례의 방식에 의한 삭제나 수사를 통해 가지고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그리고 이런 사이버 공격부대들에 의해서 완전 난장판이 된 뒤에 소송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를 달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관해서는 조금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인기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위로 이것을 제한하고 일반적인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회원등록을 할지 말지 이것은 자율로 알아서 하시되 선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을 해야 되겠지요. 저는 어떤 정당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필

요 없다고 보고요.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들어서 당선 또는 낙선……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운영의 예가 조금만 쌓이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몇 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되는 의무를 두고 일정 선거기간 동안에는 사이트에서 선거에 관한 흑색선전이나 이런 것을 관리할 추가인력을 두어야 되지요. 그 정도의 공익적인 의무는 부담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이런 정도가 아마 최소한의 장치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参考人 李昌浩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삭제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그런 욕설 같은 것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된 바가 없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회원등록을 안 받고 글을 쓸 수 있게 자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좀더 공익적으로 가차고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실명제로서는 안 된다 최소한 신용조회를 통한 실명제는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정책적인 문제,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그 정도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영세 위원 단순한 등록만 가지고요?

○参考人 李昌浩 예, 단순한 등록으로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이고 검열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회사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다 장치가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아예 참여를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알몸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저는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익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는 글을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비방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얘기를 쓰더라도 실명으로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치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권영세 위원** 익명으로 좋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의의 몇몇 사람들만 상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선의의 사람들의 방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걸러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유시민 위원** 우리가 지금 논쟁하려고 모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고 되는 전문적인 식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제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을 여쭙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쓸 사람만 특별히 로그인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참고인 李昌浩** 없지요. 왜냐하면 로그인을 안 하고 선거 관련 글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다 지워야 되고……

○**유시민 위원** 예컨대 사이트에다 “선거 관련 글을 쓸 분은 꼭 회원등록을 하고 하십시오. 아닌 사람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쓰고 나가버리면 방법이 없지요?

○**참고인 李昌浩** 없지요.

○**유시민 위원** 두 번째, 예컨대 30대 사이트나 50대 사이트에서 신용정보회사와 연동되어 있는 어떤 신원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 협정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어떤 사이트가 30대 사이트나 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까?

○**참고인 李昌浩** 객관적인 데는 없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러면 지금 신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곳이 랭키닷컴입니까?

○**참고인 李昌浩**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참고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시민 위원** 그러면 랭키닷컴 이외에 권위 있는 사이트의 방문자 순위나……

○**참고인 李昌浩** 없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랭키닷컴이 하고 있지요? 랭키닷컴이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가진 데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리putation(리putation)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로 간주합시다.

○**참고인 李昌浩** 랭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요.

○**유시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랭키닷컴의 30

대 사이트를 시장점유비율로, 방문자 순으로 할 때……

지금 며칠을 주기로 순위가 발표되지요?

○**참고인 李昌浩** 1주일 주기입니다.

○**유시민 위원** 1주일간 변동이 꽤 많습니까?

○**참고인 李昌浩** 변동이 많지요.

○**유시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 제정 시점에서 어떤 사이트를 30대 사이트로 지정했을 때 그로부터 약 45일 후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45일 후의 사이트 점유율 순위가 대체로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참고인 李昌浩** 없습니다.

○**유시민 위원** 없지요?

○**원희룡 위원** 그것은 법에 규정하기 나름이지요. 그 정도는 법 기술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유시민 위원** 아니지요. 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권영세 위원** 일정한 기간 동안에 50대 안에 들어갔으면 그것을 50대로 보는 것은 규정 기술의 문제니까……

○**유시민 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더 들어보십시오.

예컨대 어느어느 기준시점에 30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을 의무화하도록 할 경우에 혹시 이런 제도의 변화 자체가 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李昌浩**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유시민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30대 사이트로 한정할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30대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이 의무가 부과되면 이렇게 의무가 규정된 것 자체가 시장에서 사이트 점유율순위를 변동시키는 아주 강력한 임팩트(impact)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참고인 李昌浩** 있지요.

○**원희룡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불편은 회원등록제를 달았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李昌浩 회장님께서 “선거에 관해서 의견을 밝히실 분은 회원 등록을 하라” 이것은 가능하다

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제안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은 신용정보에 의해서 조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요. 회원등록만 합니다. 대신 선거에 관련해서 글을 올릴 사람들이 회원등록을 할 때 그 사이트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정보 조회서비스에다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이 실명인지 실제 존재하는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회원등록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네티즌들은 회원등록을 하는 것과 신용정보에 의해서 조회된다는 것에서 느끼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트 관리자의 의무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신용정보에 의한 빌링 시스템 수준의 실명 확인은 불가능하다, 나는 이것이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유시민 위원 아니에요.

○원희룡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규제 장치를 함으로써 순위가 바뀌고 접속자 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회원가입 프로그램 자체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속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원가입 프로그램이나 회원가입이 신용정보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든 안 되든 접속하는 데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昌浩 회장님, 일단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다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접속자가 볼 때 느끼는 차이가 있습니까?

○参考人 李昌浩 지금 실명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희룡 위원 대상을 일단 하나로만 제한을 하자고요. 대상을 어디로 하느냐는 나중 문제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의 인기 사이트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예요. 왜냐하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체 방어수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30대 사이트만 하자고요. 그것은 우리가 법을 정하면서 주요 언론사들의 닷컴, 인터넷 온라인에서 실제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100대로 해야 커버가 된다면 100대로 지정할 것이고 30대로 해야 된다면 30대로 할 것이고 저희에게 합리적인 지정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문제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에 따르는 비용, 접속자들에게 특

별한 불편이 있는지…… 회원등록 프로그램하고 지금 신용정보에 의해서 실명을 확인하는 것하고 접속자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参考人 李昌浩 아까부터 이 정책의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공익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완전히 부작용을 최대한……

○원희룡 위원 회장님, 정책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예를 들어 접속자에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参考人 李昌浩 접속을 하는 사람은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데 접속을 한 사람이 접속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효율성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원희룡 위원 李 회장님, 아까 선거에 관해서 의견을 올리려는 사람들에게 회원등록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접속자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회원등록 프로그램을 의무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参考人 李昌浩 회원등록을 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강한 제재인데 이것은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것이 다르거든요.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도 왜 사람들이 그러느냐 하면 이 데이터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다 쫓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신용정보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등록을 하면 그 데이터를 회사가 가지므로 어디든지 자기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안 쓰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해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인터넷을 통한 참여 민주주의를 얼마나 저해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유시민 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신용정보회사와 연동되어 신용확인절차를 거치는 사이트에 자기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갑니까? 그쪽에 집적됩니까? 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가 어떻습니까?

○参考人 李昌浩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인증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원희룡 위원 지금 앞뒤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데 인적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만 사후적으로 확인이 되지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없는 사람은 어차피 이것을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추가로 노출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용정보기관에 개인의 신용과 인적 사항에 대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만 사후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지 회원등록을 한다고 해서 신용정보기관에 추가되는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参考人 李昌浩** 추가되는 정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원희룡 위원** 사실 관계에 대한 의견만 정확히 해 주십시오. 어차피 정책적인 판단은 저희 소위에서 할 것이니까요. 추가로 노출되는 정보는 없지요?

○**参考人 李昌浩** 추가로 노출되는 정보는 없는데 책임문제이고 현저하게 제어할 것이라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것은 일단 물 건너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느낌이 드는데요.

○**원희룡 위원** 아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요.

○**参考人 李昌浩** 전자서명제 같은 경우도 잘 쓰면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핵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공문서를 찾는다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할 때 국민을 편하게 해 주려고 만든 제도가 글을 쓰는 데 통제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핵이 그렇게 개발되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게 되면 개발의 의미가 없듯이 역시 이 전자서명제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정배 위원**李 회장님, 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일단 인터넷상에서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서 흑색선전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비방이 추적 불가능할 정도로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전자서명제를 도입하면 흑색선전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강한 것 같고요. 대신에 표현의 자유는 많이 위축되는 것 같고요. 그런 강한 수단부터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 그것들을 각각 검토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채택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다 적절하지 않다면 아예 실명제를 포기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논의해서 결정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유시민 위원** 제가 대안을 정리하면 첫째는, 현행대로 아무 규정 없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회원등록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용정보회사들과의 연계 속에서 본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최소한 가공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이 전자실명제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1번으로 가는 것이고 어느 것이든 그 외의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천정배 위원** 그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원희룡 위원** 3번 안으로 합시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안 계시고 자민련도 안 계셔서 합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세 번째인 실명제를 회원등록 하는 것으로 하되 아까 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자율적인 실명제는 사실상 실명제가 아닌 것과 같으니까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3번 안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위원** 글을 쓰는 사람이 최소한 실존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방식 정도로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지요?

○**권영세 위원** 그렇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럴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하겠습니까?

○**원희룡 위원** 지금 후보자 본인들에 대해서는 흑색선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동 의원직 상실까지 두면서 온라인공간에서는 방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신에 기간과 대상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안을 제시하면 구체적인 결정은 조사를 통해서

하되 약 50대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요언론사가 운영하는 닷컴,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50개가 더 되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것을 불필요하게 확장할 필요는 안 느낍니다. 왜냐 하면 후보자나 정당은 자체 방어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는 빠고, 인터넷 언론기관 중에서 실제로 지명도가 있는 상위 50대 정도로 아무런 연고가 없어도 정치사이트라고 해서 들어와서 글을 올릴 정도의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는 사이트 정도로 제한하고, 외형적으로는 회원등록을 해야만 선거에 관한 글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관한 글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현행법상의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유시민 위원** 그렇게는 못 해요. 왜냐 하면 선거에 관한 글을 남길 사람만 회원등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사이트 자체가 글쓰기 기능이 회원등록을 거쳐서 반드시 로그인하게 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권영세 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에다 정치적인 글을 남길 일은 없고……

○**유시민 위원** 그렇게 한다니까요.

○**권영세 위원** 연예 사이트나 이런 데에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확률이 적으니까 제한하려면……

○**유시민 위원**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인터넷사이트의 사이버공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계속 논하지만 실제 정치정보, 선거정보에 대한 유통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 전혀 파악을 못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미 드러나 있는 몇 개의 사이트에 관해서 어떻게 규제할까 이것만 논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이 어떤 사이트에 글쓰기 권한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부여하면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사이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를 지정하게 되면 무조건 그 사이트 안의 어느 코너에 어떤 글을 올리든 회원은 무조건 회원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정보가 오고가는 공간과 여타 정보가 오고가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사의 조선닷컴, 중앙일보의

조인스닷컴에 이 의무를 부과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까지 회원등록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 회사들이 신용정보회사들과 연계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단계의 회원등록제만 하고 있던 닷컴 기업이 세 번째의 한 단계 더 높은 정도의 의무를 부여받게 될 때 이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선거에 관한 글을 남기는 코너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를 들어 ‘백자평’에 규제가 갑니다. 그리고 조인스닷컴이라면 레저, 라이프스타일, 위크엔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은 규제를 설치할 때는 닷컴 기업들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 사이트가 담고 있는 모든 콘텐츠와 관련한 방문자의 수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조치가 마치 알콜중독자들이 야간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밤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법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언론사들이 따라줄 것이냐? 이 법을 만들고 나면 다음에 이 법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언론사들이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규제를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원희룡 위원** 지금 원론적인 입장에서 자꾸 왔다갔다 하시는데 원래 회원가입제를 범개협에서 합의했고 열린우리당 안이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회원가입제하고 똑같습니다. 회원가입제를 도입함으로써 나오는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시면 논의의 핀트가 안 맞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원가입제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 외로 하자고요.

○**유시민 위원** 영향이 있다니까요?

○**원희룡 위원**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1안이나, 2안이나, 3안이나, 4안이나를 놓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유시민 위원** 제 안은 2안으로 가는데……

○**원희룡 위원** 2안하고 3안하고 글 쓰는 입장에서 차이가 됩니까?

○**유시민 위원** 차이가 있지요.

○원희룡 위원 가명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밖에 없잖아요?

○유시민 위원 그렇지요.

○원희룡 위원 그런데 선거에 관한 글을 올리는데 왜 가명을 허용해야 합니까? 인터넷실명제라고 합의한 것이 도대체 뭐를 합의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논의가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해야지 지금 원점으로 가서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입니까, 됩니까?

○유시민 위원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거에 관해서만 글을 쓰는 사이버공간을 한정해서 거기에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상거래를 하는 부분은 전자서명을 받아오지 않으면 구매 자체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규제장치를 두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사이트로 가서 몰래 쓴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그것을 다 규제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회원제를 하게 하든 전자서명제를 하게 하면 선거에 관한 글이 아닌 다른 글을 쓰는 사람에게도 규제가 확장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룡 위원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 얼마든지 나올 것입니다.

○천정배 위원 이 글이 선거에 관한 내용이면 그것을 규제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치 이야기라든가 문화 이야기라면 규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들어와서 쓰는 사람의 글 내용을 따져봐야 할 것인데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일단 실은 다음에 그 내용이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규제를 하려면 그것을 보고 규제할 방법은 없고, 미리 들어올 때, 엔트리과정에서 차단하든지 실명을 하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룡 위원 즉시 삭제할 관리인력이 있으면 선거에 관한 기사가 올라오는 즉시 회원등록이 안 된 글이면 삭제하면 될 것이고, 인력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설계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열거두면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회원등록하고 관련된 부분은 천정배 위원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유시민 위원은 저 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모르는 소리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문화나 교양부분에 영향을 안 주고, 물론 거기에도 정치인에 대해서나 선거에 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겠지요. 조선닷컴이나 동아닷컴을 보더라도 정치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글들이 이런 데에 집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엔트리할 때 인증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조선닷컴이든 특정 사이트에 ‘정치면’ 이렇게 해서 거기에 글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선거에 관한 글은 아니잖아요? 그 점을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선거에 관해서 흑색선전을 한다든지 건전한 의견을 발표한다든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선거는 아니지만 정치면에 정치와 관련된 또는 정치면에 문화와 관련된 글을 썼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이니까 그 사람하고는 구별할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규제는 선거를 골라서 규제를 한다면 이제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규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분해서 규제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원희룡 위원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이것을 의무로 부과하면 이것을 최소화용 그리고 자신들에게 오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시민 위원 75일 후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 기술발전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원희룡 위원 이번에 적용할지, 언제부터 적용할지 여부는 여기에서 얼마든지 부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본질적인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천정배 위원 원 위원님, 제가 이 부분 소견을 구합니다. 아까 그것이 기술적으로 된다면, 발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행위는 결국 그 글 쓴 내용에 대한, 그 글의 검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

봐야 이것이 선거에 관한 글인지 또는 선거라고 볼 수 없는 무관한 글인지를 구분해서 무관한 글이라면 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후에 삭제하거나 무슨 규제를 받는 것 말고 들어올 때부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요?

○유시민 위원 없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천정배 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원희룡 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거꾸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회원가입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원가입 허용한다고 방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지 말고……

○유시민 위원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원 위원이 못하게 했잖아요?

○원희룡 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찬반이 아니고 지금 논의하는 지점 자체가, 지금까지 실컷 논의한 것을 바로 무시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회원운영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자는 것입니까? 회원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자체가……

○천정배 위원 뭘 논의했던 간에……

○유시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좀 합시다.

○천정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뭔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희룡 위원 안 그러면 범개협의 인터넷 실명제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 합의됐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인터넷도 원론부터 얘기할까요?

○유시민 위원 인터넷도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해요? ○천정배 위원 그런데 범개협도 오해하거나 잘못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천정배 위원 유 위원, 말씀하세요.

○유시민 위원 아까 1, 2, 3, 4안 했는데 아무 규정이 없는 1안이 현행 아닙니까? 2안부터는 말하자면 실명제라는 넓은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권영세 위원 등록제이지 무슨 실명제입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유시민 위원 그러면 3번 안도 완벽한 실명제

는 아니지요. 다 차명이 가능하니까.

○권영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실명에 대한 노력을 보이는 안이니까……

○유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1, 2, 3, 4해서 단계별로 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2번에 대해서 실명제라는 말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유시민 위원 실명제를 못 쓴다면 3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권영세 위원 그것은 실명 확인에 대한 노력은 있는 것이고.

○유시민 위원 물론 법이라는 것이 원리상 맞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목적하는바 이외의 다른 부작용을 되도록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2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자는 것인데 3안으로 할 경우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주요 신문사의 닷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선 회원제로 하고 있는데, 글쓰기는 꼭 회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자들끼리, 그러니까 독자가 쓴 글에 대한 리플이 떠다닙니다. 그것은 익명으로 쓸 수 있어요. 시스템이 이렇게 짜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닷컴기업에서 짜놓은, 언론사에서 짜놓은 이 시스템에서 익명으로 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지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사 중에서 오마이뉴스가 있는데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자율적으로 3단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위 기업 아닙니까? 지금 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3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단계를 하면서 동시에 1단계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쓰는 것을 실명계시판과 익명계시판으로 분리해 자기가 실명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실명으로 쓰고 익명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익명으로 쓰고. 그래서 이 2개의 게시판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각각 다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오마이뉴스 게시판에서도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

터넷 언론사의 기업환경 혹은 그 시스템 이런 데에서 이 3단계를 강제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럴 경우 언론사들이 순순히 ‘아 이구, 법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달 안에 전부다 시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만약에 언론사에서 ‘우리는 반대다, 우리는 못 지키겠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이 3단계의 법을 강제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제기한 문제의식이구요.

두 번째는 정치정보 유통이라는 것이 그것의 절대적인 비중으로 볼 때 주요 신문사의 닛컴이나 유력 인터넷 신문사의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기에서 익명으로 글 쓰는 기능이 정지된다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시장 쪽에 리스펜스(Response)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추측하기로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실제 3단계의 인증절차를 안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는 곳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회원 포털사이트의 가명이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생겨나겠지요. 이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법이 3단계의 규제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해서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느냐? 두 번째 이것을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냐, 세 번째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3단계는 실효성이 낮은 대신 굉장한 논란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우려하는 점인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알콜 중독자들은 우리가 술을 못 먹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술집에 알콜 중독자를 검색하는 장치를 둘 수는 없어요. 야간의 범죄행위를 막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야간통행금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법률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우리가 생각해 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뜻에서 2 단계로 하고 그 대신 선관위가 사이트 관리자들에게 대해서 부과하는 의무나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함으로써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권영세 위원 사이트 관리자가 사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전에 자기가 부적합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언제든지 밝혀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여지가 있어야 그것이 사전적으로 예방이 되는 것이지, 사후적으로 선거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의도하는 효과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인터넷 언론사 순위의 영향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할 때 그것을 한정하는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 간에 순위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시장에서 수없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도 새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피해가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 빠지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균형이 잡혀 제대로 된 신문사가 50개가 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유시민 위원 그 50개를……

○권영세 위원 50개가 됐건 40개가 됐건 30개가 됐건……

○유시민 위원 그런데 뭘 기준으로 하실 것입니까?

○권영세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 봐야지요. 그런데 우선 접속자수가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종의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 이룰 수 있도록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제한을 하는 것이지, 다 하자면 다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제한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가는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접속자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시민 위원 점유율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접속자수, 페이지 비율 등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 부분은 사후문제입니다.

○유시민 위원 그것을 하지 못하면 몇 대 기업, 범위를 한정할 수 없지요.

○천정배 위원 다음에는 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희룡 위원 저는 지금 논의를 하면서 참 안

타까운 점이, 이것 원론적으로 얘기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몇 바퀴 돌고 와서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범개혁, 1안, 2안……

인터넷실명인증 도입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가명제를 얘기하면 안 되지요. 뭐 얘기해도 좋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2단계, 3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2단계와 3단계는 접속자 입장에서 볼 때 또는 인터넷 언론 자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터넷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접속자의 편의 때문에 2단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그런 지적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부과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시간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는 50대 사이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번 접속자 수가 바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선관위 보고 지정하라고 하면 됩니다. 선관위에 대한민국 최고의 9명의 위원님과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지뷰(page view)로 할 것인지 방문자 수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30대 사이트 이내에서 선관위가 정한다든지 50대 사이트 이내에서 한다……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정하는 시스템만 법에 정해 주면 되지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 되고요.

또한 기간은 어떻게 둘 것이냐? 예를 들면 1개월마다 이 사이트를 풀지 말지를 검토하고 그 대신 업자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달도록 하는 것은 이행기간을 얼마를 준다, 1개월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조의금품 금지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형벌을 매기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법으로 정하는 이상 안 지키면 영업정지를 하든지 과태료를 매기든지

형벌을 매기든지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정해 봐야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걱정해서 법을 만들면 어떻게……

○**유시민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르다니까요. 언론에 관한 것은 달라요.

○**원희룡 위원** 아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유시민 위원** 아니, 다른 사람의 논지를 왜 그렇게 왜곡하십니까?

○**원희룡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반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 봐야 어차피 익명으로 올릴 사람들은 다른 사이트로 갈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가라 이거예요. 그 사이트들은 사이버수사대에서 IP 갖고 추적해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네티즌들이 주로 방문하는, 아무래도 빈도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를 달자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2단계, 3단계라는 것은 접속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대상의 제한이라든지 기간의 제한이라든지 이행기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행가능한 방법과 그에 대한 제재수단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적 판단을 하고 나면 어떤 제도로 할 것이냐는 그다음 고민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해 놓고 그 방법이 아닌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체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법상에서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로 인해서 불편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우리의 숙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논의를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유 위원님에 대한 반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한 번씩만 발언순서대로 발언하시고 대체로 정리해 봅시다.

○**유시민 위원** 안 지키면 어쩔 것이냐, 그 문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때로 구체적인 범위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규제

를 하고 안 지키면 잡아넣고 당선무효시키지요.

그러나 언론사라는 것은 선거하는 기관도 아니고 전부 다 자기들 영업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영업내용 중에서 정치 관련 정보가 돌아다닌다는 것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가해서, 또 철학적인 논쟁도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안 지키면 처벌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원희룡 위원 지금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 통신서비스회사에서 통신사실 자료 제공 안 하면 과태료 매깁니다. 거기도 영업인데 왜 제지합니까? 다 없애시다.

○천정배 위원 잠깐만요.

○원희룡 위원 왜 인터넷에 대해서만 과도하다고 합니까?

○천정배 위원 원 위원님, 남의 의견 들으시고 뒤에 반론하세요. 유 위원 발언하시고, 되도록이면 끼어들지 말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굉장히 비생산적인 논의가 되고 있어요.

○유시민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현재가 1안이고 2, 3, 4…… 4안이 전자인증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원 위원님은 3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 위원 그렇습니다.

○유시민 위원 좋습니다. 저는 굳이 3으로 안 해도 되고 2 정도만 해도 된다, 2를 기본으로 하고 2, 3 중에 운영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고 보는데 불안하시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컨대 뭘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해서 어떤 범위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 그것만 해 주시면—저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꺼리는 것인데—3번으로 하시되 우리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천정배 위원 질의해 보시지요.

○권영세 위원 2번으로 하실 때는 범위 없이 모든 인터넷사이트는 다 하려고 하십니까?

○유시민 위원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권영세 위원 언론기관은 좀 다르다고 그랬는데 인터넷 언론기관도 틀림없이 일종의 공익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제는 얼

마든지 가할 수 있고 규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처벌을—그게 강력한 처벌을 해서 언론사를 죽일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낮은 수준이라도 일정한 처벌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명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 유시민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단순한 회원등록은 절대 실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등록제라고 얘기해야지 그것을 실명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원희룡 위원께서 2번 회원등록제하고 낮은 수준의 인터넷실명제하고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3번으로 갈 경우 회원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단 한 가지 익명성 뒤에 숨어 가지고 뭔가 해 보려는 사람에게는 불편하다, 그런 차이가 하나 있다 이거지요. 대부분 정상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글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불편함도 차이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러면 3번으로 기술적으로 집행 가능한 안을 한번 내주십시오.

○원희룡 위원 이제야 논의가 좀 생산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위원 원래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좌충우돌하다가……

하도 강력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합시다.

○원희룡 위원 구체적인 의견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잠정적으로 50대 사이트로 제한하고요. 일단 기간도 제한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대신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선관위에서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1개월마다, 내지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판정해 가지고 이것을 고시하도록 하고……

○李在五 委員 선거는 선거운동대상기간이 있는데……

○천정배 위원 상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원희룡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간제한은 뒤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에요. 기간제한을 둔다면 1년 정도…… 1년이든 6개월이든 좋습니다.

○유시민 위원 선거가 자주 있으니까 상시지요.

○원희룡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50대 사이트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현재 최소한의 빌링시스템(billing system) 정도의 이런 것은 갖고 선거에 관한 글을 올리게끔 하라는 것이고요.

○유시민 위원 50대 사이트는 어느 범위에서 50대 사이트입니까?

○원희룡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선관위의 전체 의결로 정하도록 하되 전문가 내지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고 접속자 수, 페이지뷰 이런 것을 적절한 용어로 해 가지고—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실명제를 고민하는 젊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3개월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이 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기간은 한 1개월 정도 주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용은 어차피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50대 사이트, 상시, 3개월마다 대상을 고시하고 1개월 내에 이행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서비스업자들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실 자료 제공을 해태했을 때 내는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이런 정도면 균형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안이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저도 한번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 회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초 범국민정개협에서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아, 이것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비방하거나 흑백선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생각했구나’ 해서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특히 오늘의 논의과정을 보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 실명제든 등록제든 도입이 불가능하구나’ 하는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개협 의견은 틀렸고 결국은 각 사이트 운영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면 규제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1, 2, 3, 4안 중에 법적으로는 1안밖에 길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50개 사이트를 먼저 정한다든가—정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아까 50개라는 것은 인터넷언론 중에서 특정부분일 것

아닙니까? 정치·경제·문화 다 있을 텐데 잘 해야 정치부분으로 특정해서 50개를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원희룡 위원 사이트 자체를 정하는 것입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사이트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를 테면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전체를 한 사이트로 보는 것입니까?

○원희룡 위원 그렇지요.

○천정배 위원 특정 언론사를 얘기하기는 우습습니다마는 A라는 인터넷 매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안이든 2안이든 모조리 그것을 거쳐야 한다는 식으로 강제하자는 것이지요?

○원희룡 위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쓴다면……

○천정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 위원님 말씀대로 2안이든 3안이든 4안이든 간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쓰려면 먼저 당신의 신원에 관해 등록이든 확인이든 거치고 들어와라 그러면 될 것이고 대신에 선거가 아닌 오락으로 들어오거나 정치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 없는 정치이야기를 하려면 그냥 들어와라…… 그러면 그 부분은 사전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회원등록하고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선거에 대해서 쓰려고 들어갔다고 생각이 바뀌어서 안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문화에 대해 글 쓰려고 생각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흑색선전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을 훨씬 넘어서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규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헌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설령 50개를 지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2안이든 3안이든 4안이든 이를 테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견해를 표시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전부 다 등록이든 인증이든 받아라, 이렇게 법으로 강제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규제받는 50개를 제외한 나머지 51번째 사이트로 네티즌들이 재빨리 이동해 가지고 50개 사이트는 파리를 날리고 51번째 것이 매우 활성화되면 거기 가서 흑색선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추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규제하려면 선관위가 매일 같이

바쁜 거예요. 오늘은 50개가 그런 것이니까 51번째가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날은 고시를 바꿔서 거기에다 넣어라,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꾸는데 시간도 걸릴 것 아니에요?

○원희룡 위원 그래서 3개월 정도로……

○천정배 위원 3개월 정도가 아니라, 현재 50개가 규정되어 있으면 어쨌거나 돈이 얼마 들든 간에 그 장치를 해야만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1번째 사이트에 네티즌들이 짝 몰려 가지고 거기는 실명인증은커녕 아무것도 없이 막 흑색선전을 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규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희룡 위원 사이버수사대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인터넷 매체의 속성상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인터넷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상 불가능할 것 같고 50개든 30개든 100개든 1만 개든 그것만 규제하겠다는 것도 헌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컨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이트가 왜냐는 규제하는데 51번째 똑같은……

○원희룡 위원 이러면 합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정배 위원 아니 내 말 들어 보세요. 합의도 틀리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형식적으로만……

○원희룡 위원 그러면 기존 합의사항은…… 그러면 다 원점에서 하십시오.

○천정배 위원 그러면 그러시고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원희룡 위원 무슨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천정배 위원 저는 토론과정에서 오히려 2안조차도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민주당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원희룡 위원 그러면 기존 합의사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정배 위원 그래서 나는 기존 합의가 틀렸다고 봅니다.

○원희룡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다 원점에서 할게요.

○천정배 위원 그러세요.

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권영세 위원 지금 소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천정배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을 마칠게요.

○원희룡 위원 그러면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천정배 위원 판지거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권영세 위원 아니 판지는 그쪽에서 먼저 걸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제 의견은 그래요. 아무리 합의가 됐어도 이것은 헌법상으로도 기술적으로 보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신이 없는 말이지만 아마 2안조차도 불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결국 그 문제는 예컨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홈페이지는 제가 자율적으로 저를 비방하거나 영땡한 흑색선전의 장으로 쓰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제 마음인데 헌법상의 원리라든지 기술적인 원리로 보아 그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것이 저의 레이맨(layman)으로서의 견해입니다.

원 위원님이 오늘 너무 흥분하시는데 저는 과거에 합의했던 것을 정략적으로 없애자는 차원이 아니라 매우 생산적인 토론과정을 거치고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잘 몰라서 2안이든 3안이든 4안이든…… 4안은 좀 과도하다고 봤지만, 2안이든 3안이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아, 2안이고 3안이고 실제상으로 불가능하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서로 생각해서 논의해 보고요.

○유시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붙이면 원 위원님 말씀도 과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요 언론사의 닷컴은 이미 3단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문화나 생활이나 이런 쪽에도 댓글 달려면 회원로 그인을 해야 됩니다.

○천정배 위원 제가 그 문제하고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문제하고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자유영역에 속하는 부분인데 국가가 법에 의해서 강제하는 문제는 규범상 헌법위반이나 이런 문제

가 개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 견해는 토론과정에서 느낀 것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원희룡 위원 우리가 지금 결론을 맺는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천정배 위원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오후에 또 얘기하고, 모처럼 정개특위 李在五 위원장께서 오셔서 우리의 훌륭한 토론을 지켜보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아주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위원장이 소위에 참석해서 일일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대상황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선거법이든 정당법이든 정치자금법이든 무엇을 많이 규제한다기보다는 많이 푸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 이것이 선거법 부분에 해당되는 것 인지는 잘 판단이 안 되는데, 피선거권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선출직공직자들이 재임 중에 뇌물 사건이나 비리사건 등에 관련되어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때는 다시 선출직공직자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고 출마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도…… 이런이런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봤 습니다마는 선출직공직자가 재임 중에 비리혐의나 뇌물사건이나 부패혐의와 관련되어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시 선출직공직자로는 출마를 못하게 하는 내용이 개정법에 하나 주어져야 정치인이든 아니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이거 한번 잘못 걸렸다가는 다시는 선출직공직자로 못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천정배 위원 선출직공직자가……

○李在五 委員 그렇지요. 선출직공직자가 자기 임기 중에, 재임 중에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 다시 선출직공직자로는 못 앉는단 말이에요.

○천정배 위원 현재 법은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그것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李在五 委員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선출직공직자나 선거에 의해서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 재임 중에 뇌물이나 비리를 저질러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때는 다시 선출직공직자로는 출마를 못하게 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선출직공무원에 입후보 못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공무담임권을 제한해서 공무원이 못 되게 해 버리고 이것을 공기업 낙하산 인사까지 함께 적용해도…… 이왕 도입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李在五 委員 지금 이렇잖아요. 내가 국회의원하다가 뇌물사건에 관련되어서 감옥 갔다 나와도 몇 년 지나서 사면 복권되면 다음에 또 출마하잖아요. 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선출직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규제의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장관 외의 다른 공직자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다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출직공직자가 재임 중에 뇌물 등 비리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사면 복권되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선출직공직자로 출마 못 한다는 것을 이 선거법 조항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를 선거법소위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제 의견은 선거법에서 그 조항이 가능하다고 보고 피선거권 제한이 있고 공무담임권 내지는 공기업 인사까지 막으려면 아마 공무원 관련법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李在五 委員 우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원장님 알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2월 9일까지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각 당이 공천과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선거법이 빨리 마무리 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전체 일정에 아주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각 당이 경선을 하려고 해도 선거법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주 안으로 협의를 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정수나 이런 것도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노력해서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을 앞으

로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3시에 속개할 테니 3시를 꼭 지켜 주시고 민주당 위원님께도 특별하게 연락하셔서 3시에 꼭 속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위원 참고로 오후 진행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인데 법무부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이……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다 와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천정배 위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에는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성기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께서 특별히 방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소위가 다루게 될 지역구 의원정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잘 알다시피 지난 12월 말이 지남으로 해서 선거구획표가 위헌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張誠源 위원님께서 안 계실 때 인터넷실명제에 관해서 상당히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張誠源 委員 대충 말씀 들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張誠源 委員 제 입장은 그런……

○천정배 위원 그 입장은 전자서명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말씀이신가요?

○張誠源 委員 예.

○유시민 위원 그런데 張誠源 위원님, 제가 지금 아이뉴스에서 확인한 것인데요, 김영환 민주당 전자정당추진특위 위원장이 전자서명실명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다음에 강선구 민주당 전문의원은 민주당은 전자서명실명제 도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고, 민주당 신철호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은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는 인터넷실명인증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張誠源 委員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런 것이고 당 안에서 좀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천정배 위원 그 문제는 뒤에 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하고요.

김성기 위원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정수를 먼저 토론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당장 결론이 잘 안 날지도 모르니까 우선 실무적인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관해서인데요. 우리가 어제 회의를 마치고 오늘까지 시간이 좀 있었고 각 당 간에 논의된 것이 혹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민련 金學元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는 3당의 오늘 현재까지의 의원정수 문제, 선거구 문제, 저희가 정해 드린 바 있는 여성전용구 문제를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라든가 혹은 재정립된 당론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다른 것을 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면 어떨까 하는데요?

○권영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간사가 빠져 가지고 제가 대표해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요. 법무부 쪽에서 의견을 조율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천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합의사항 대비표’란 자료의 “통신자료제출요구권”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통신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서 법무부나 법원은 이의는 없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런 식으로 일단 왔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외의 기타 의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어제 선관위의 의견을 문서로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직 안 들었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천정배 위원 중앙선관위의 의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듣고 법무부는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의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법무부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먼저 제1안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거부하셨기 때문에 제2안

으로 해서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또는 선임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천정배 위원** 법무부에서 출석하셨습니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출석은 안 하고 의견서만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법무부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범죄의 단기공소시효 제도인데 이것은 범개협 안대로 행위 시부터 6개월로, 저희들도 이미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장부는 보존연한이 3년인 점을 고려해 가지고 공소시효도 최소한 3년으로 함이 상당하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선거범죄의 단기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단기공소시효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합의가 되었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원래 그렇게 합의된 내용인데 법무부가 좀 오해하는 바람에 의견이 나왔고……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원희룡 위원** 전문위원님,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법무부 관계자가 안 계시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원희룡 위원**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 “범죄 발생일”로 했을 때 규정 방식이 행위시도 있을 것이고 범죄 발생일도 있을 텐데 일반적인 공소시효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이런 식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계속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 발생일이 앞서서부터 기산된다든지 해서 법체계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 용어는 신중히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천정배 위원** 조문화할 때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기로 해야 되겠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원희룡 위원** 공소시효의 일반조항에 맞게끔 용어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알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통신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서인데……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통신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아시니까 놔놓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통신제한조치, 일종의 감청이 되겠습니다. “감청이 아닌 단순한 통신자료제출요구권만 부여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까지 받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상하관계나 수사지휘관계에 있지 않은 선관위가 검찰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상 현재 검사장 승인 제도의 취지가 인권침해 요소가 농후한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수사법기관인 검찰에 의한 최소한의 통제를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검찰과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한 국가기관의 통신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하여 관할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식으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예로 들어 가지고 사법경찰권이 없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통신사실에 관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법무부 의견이 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법무부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법무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고 선관위는 그러지 말고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선임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서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권영세 위원** 선관위 쪽의 안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원희룡 위원** 선관위 안에 찬성합니다.

○**천정배 위원** 위원님, 좋습니까? 그렇게 합의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제 의견으로는 선임부장판사라는 제도가 법원조직법이나 법적인 제도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규나 법문에서는 수석부장판사로 통일해서 쓰고 있고 수석부장판사는 통상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급에 해당하는 판사입니다.

○**천정배 위원** 수석부장판사는 있습니다. 다른 법문에도 있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선임부장판사라는 것은 정확한 법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부장판사가 여럿 있을 때 가장 효력이 높은 분을 선임부장판사라고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법문에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조문을 할 때 선임부장판사 제도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며 선임부장판사로 불러도 되는 것인지……

○**원희룡 위원** 결론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받아서 전체회의 때, 심의 때라도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권영세 위원** 업무부담이라든지 업무조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지요.

○**원희룡 위원** 법원 측의 반대가 없으면 선관위 안대로 가는 것이고 만일 법원 측이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유보를 합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법원행정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임부장판사라는 것은 법문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데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가 없는 지방법원이 더러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선임부장판사라고 통칭을 한다……

○**천정배 위원** 통칭이지 법문에 써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법원에 정식으로 물어보고,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자구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조문화할 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원 쪽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위원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넘어온 것 중에서 “공범·참고인 도피 시에도 피의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3년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옛날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인데……

○**천정배 위원** 현재 피의자 본인이 도피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되어 있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현행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공범이라는 것은 원래 같이 시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범이 도피해서…… 공범이라면 그 사

람도 범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의자이지요. 한 피의자가 도피하면 공범인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 위원** 기소되었을 때에만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권영세 위원** 저도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원희룡 위원** 지금 이것을 어느 범죄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선거……

○**권영세 위원** 일반적인 선거범죄인데요.

○**원희룡 위원** 일반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3년입니까?

○**천정배 위원** 일반적으로 6개월인데 도망가면 3년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원희룡 위원** 선거법상 본인의 공소시효 3년이 어디 있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268쪽에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입니다.

○**유시민 위원** 범인과 공범, 참고인…… 참고인도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천정배 위원** 참고인이 도피하면 참고인에 해당하는 당해 피의자가……

○**권영세 위원** 참고인을 은닉하거나 했을 경우에……

○**천정배 위원** 공범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범위가 매우 모호해져 가지고 피의자 공소시효 자체의 만료일을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인이라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에 의해서, 진술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참고로 부른 사람이 참고인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인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마당에, 예컨대 수사기관인 검찰이 누구를 참고인으로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도피해서 안 나오면 그 사건의 피의자 공소시효가 그냥 늘어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한 공소시효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참고인의 범위의 사람을 누가 판정할 것인가? 최종적으로는 물론 법원에서 판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참고인이라는 범주로 이것을 쓰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위원** 일단은 참고인은 제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위원** 공범도 범인이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위원** 공범은 연좌제 비슷하게 다른 공범이 도피하면 다른 사람도 3년으로 자동으로 늘어나는, 조사를 받거나……

○**천정배 위원** 두 사람이 같이 범죄를 했는데 한 사람이 도망가 있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은 현행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늘어나지만 도망 안간 사람은 6개월만 있으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도망간 사람이 나와 봐야 함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고의로 공범을 도피시켰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 위원** 그 공범은 공소시효가 3년인 것이고요.

○**천정배 위원** 도망간 공범은 현행법에 의해서 3년이 되는 것이고 안 도망가고 있는 공범도 같이 3년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이지요.

○**원희룡 위원** 그러면 공범으로 상정하는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공범 조항이 적용될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천정배 위원** 이런 것 아닐까요? 당선되었든 낙선되었든 어떤 사람이 후보자 본인이라고 칩시다. 후보자 본인이 자기의 측근이든 사무장이든 누구를 시켜서 불법선거를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후보자는 교사 내지는 공모공동정범으로 후보자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무장에 해당하는 공범하고는 이를 떼면 6개월 동안 도피시킨다든가 하면 그 사이에 후보자 본인의 범죄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서 아마 그 상태에서 검찰 입장에서 그 후보자를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선거 끝나고 6개월 지나서, 그 상태에서 현행법에서는 도피를 안 했으니 후보자 자신은 공소시효가 끝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아까 도망갔기 때문에 3년의 시효가 있어서 처벌될지 몰라도 정작 선거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될 수혜자인 후보자의 경우에는 처벌 못하게 빠져나가는 수가 있는 것을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위원** 그 정도 되면 연좌제 조항으로

인해서 의원직이 박탈이 될 것 같은데요.

○**천정배 위원** 연좌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권영세 위원** 기소되었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천정배 위원** 공범이 도피했어도 기소될 만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요.

○**원희룡 위원** 법무부 의견입니까?

○**권영세 위원** 일단 제껴놓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희룡 위원** 굳이 반대하지 않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하십시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원희룡 위원** 법 체계상 유례가 없는 제도를 제안하시기 때문에……

○**천정배 위원** 이 문제는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지 모르니까 법무부에 다시 연락을 해서 이것에 대해 성안도 하고 확실한 제안설명 같은 것을 붙여서 다음 회의에는 법무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나오라고 그러세요.

○**원희룡 위원** 참고인까지 적용한 것을 보면 무책임한 의견이라고 보입니다.

○**천정배 위원** 검찰에서 매우 편의적으로 접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낸 옛날 자료거든요.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문제점과 이유를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유시민 위원** 과거에 사례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원희룡 위원** 이때는 범인이 도피시킨 때이지요? 공소시효를 늘려서 기소할 때 도피시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터이고 아마 그 정도면 검찰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범인이 능동적으로 도피시킨 경우라면 저는 검토가 조금 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김용희 과장님이 제시한 그 자료에는 범인이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 공소시효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망간 경우에도 다 무차별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덜렁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다 엄밀한 구상을 갖고 검토

하십니다.

○**권영세 위원** 검찰에서도 도피시킨 것이라고 할 경우에는 도피시켰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되니까 그것을 빼고 공범·참고인을 도피시켰든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도피했던 그냥 참고인 도피 시에도 무조건 연장하는 것으로 하지요.

○**유시민 위원** 법무부에서 온 개정의견은 그러네요. “다만,……” 이하를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2003년도 12월에 온 것입니다.

○**원희룡 위원** 정식으로 법무부에서 와서 진술을 하도록 하지요.

○**천정배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연락을 해서 법무부에서 제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다음 회의에 직접 출석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게 하지요.

그러면 자료 7페이지 양성평등법문제……

○**원희룡 위원** 통신자료 제출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흑색선전 허위비방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떴을 경우에 삭제하고 통신자료 제출요구에 있어서 ID 신상자료를 통신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원희룡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망보호법에 의해서 선관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선관위 또는 통신서비스 제공회사에다가 청구해서 자기의 명예훼손에 가해를 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왜 그러나 하면 이것은 대부분 직권으로 선관위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형사고발 또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실질적인 구제절차에서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거든요. 현행상으로 어떤지?

○**권영세 위원** 현행법상으로는 없고 수사기관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으니까 해서 고소를 하거나 그러면 수사기관……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합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이트 관리자가 어떤 외부인이 들어와서 게시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그 게시물에 의해서 제3자가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 관리자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물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시민 위원** 우리나라 판례에도 사례가 있어요.

○**원희룡 위원** 관리자의 책임은 기존에 있는 제도이고 그 행위자……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접 요구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법적으로 강제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결국 어차피 처벌될 정도 같으면 수사기관에 고소인 통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겠네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원희룡 위원** 알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7페이지에 정당의 국민참여경선,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어제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 모양이지요. 정당법 소위에서는 해당 조문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아닌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당내 경선 말씀이시지요?

○**원희룡 위원** 어제 얘기하기를 정당법 소위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봐서 그와 연동되어서 우리가 고쳐야 될 내용이 있으면 검토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준비하기로 하셨는데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서 합의가 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선거법에서 정비되어야 할 것이 축정리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이것은 용어정리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내용……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용어정리도 용어정리이지만 그것보다 내용이 바뀌어진 것을 그대로……

○**천정배 위원** 어떤 것이 있어요?

20페이지에 보면 지구당이라는 말을 시·도당……

○**원희룡 위원** 아니, 용어에 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축조심사를 하면

되고 경선 관련조항, 예를 들어서 비당원자에게 경선 선거권을 준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정당법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나까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선거법을 고쳐야 될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그 준비는 아직 안 되었네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사실 그것까지는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당법에서 아예 경선을 허락해 가지고, 정당법 합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당법 2조에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당원에 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없애 버리고 그것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민경선참여가 마음대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약은 없고 그것을 선거법에 같이 넣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

○**원희룡 위원**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천정배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정당법의 그 합의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선거법 조문을 고칠 것이 있느냐……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것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정배 위원** 단순히 용어만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 내용을 고칠 것이 있느냐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정배 위원** 다음은 체납·전과기록 등 유권자 송부문제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전에 어저께 미합의사항 중에서 미합의사항 대비표는 10페이지, 선거법 참고자료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방송광고라든지 방송연설의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방송위원회에서 의견을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래요? 방송위 관계자가 나오셨나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관계자가 나왔다가 들어갔고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료로는 못 해 준다,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데 민방의 경우는 1회당 360만원, 케이블TV의 경우는 100만 원 정도 달라는 것입니다. 방송위원회에서 민방과 케

이블TV와 협의를 거쳐 본 결과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는 그 수준으로 달라는 의견입니다.

○**유시민 위원** 당연하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한 것이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 것에 보면 공익광고의 경우 10분의 1은 반드시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도 공익이기 때문에 각 방송국에 10분의 1 정도는 할애해 가지고, 지역민방도 마찬가지고 지역케이블도 마찬가지인데 10분의 1 정도 자기 채널이 있으니까 방송광고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법에서 규정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천정배 위원** 지금 방송위원회에서는 어쨌든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인데 이 제도에 직접 영향이 있는 방송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SBS도 들어갑니까?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들어갑니다. 4대 방송하고……

○**천정배 위원** 의무적으로 방송연설을 해야 될 방송으로 SBS 같은 민방도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KBS와 MBC까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공영방송 토론이 있고 그냥 방송토론이 있는데 방송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송업자들 간에 이것 때문에 토론을 거쳤는데 공영방송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도 있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민방에서는 우리는 돈 못 받고 못 해 주겠다……

○**천정배 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요. 우선 법에 그 전체로 후보자 중에 방송연설을 해야 될, 법으로 자기들이 싫어도 방송연설을 하게 강제해야 될 방송사업자는 누구입니까? KBS와 MBC 아닙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리고 SBS 기타 YTN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타 방송, 이 사람들은 선거법상 방송연설을 방영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없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SBS 같은 민방의 경우도 우리가 선거법에서 광고 수가를 규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제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그냥 시장 자율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거법상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후보자 방송연설을 방송해야 하고 그 경우에는 수가를 규제하지 않으면 도저히 실제상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이 논의가 방송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사에 강요를 하는 것이고 공영방송사에 강요를 할 때에도 지금 현재의 광고비로 책정해서 줄 때에는 국고의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공영방송사도 일부 부담을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광고비 들어가는 것의 5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주겠다……

○천정배 위원 5분의 1 수준으로 광고 수가를……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일반 상업광고 하는 수준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천정배 위원 그만큼 선거비용이 깎일 것이고 결국 국고가 보전하는 비율이 깎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다른 방송국과는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원희룡 위원 법 몇 조 몇 항입니까?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71조가 되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71조가 13항까지 있는데 어느 항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요금에 관해서는 69조8항에 있고 나머지 이하의 조항에서도 다 준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69조 몇 항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69조8항입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그것은 신문광고……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70조8항입니다.

○원희룡 위원 이것을 계산해 보면, 만약에 전 후보자가 지상파 TV 방송연설을 한다면 1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원희룡 위원 1회할 수 있고 라디오나 그냥 유

선 같은 경우, 현재는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에 라디오 2회, 텔레비전 2회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합쳐서 2회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각각입니다.

○원희룡 위원 각각 2회씩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원희룡 위원 이것을 전부 한다고 그랬을 때 방송사들의 총 매출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계산된 자료가 지금은 없습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희룡 위원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 털어서 100억이 나오니까 이것을 세금부담으로 하기에는 안 되니까 방송협회에서 이 정도는 부담을 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지금 여기에 없다는 것이지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그 자료를 놓고, 방송사에 어떤 중대한 경영상 차질이 올 정도의 할인은 저는 부담하다고 생각되고 걱정한 비용분담 차원에서는 어차피 국고에서 보전될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니까 구체적인 액수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 지역구당 평균 몇 명이 방송 TV 유선방송 전부 왜냐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안하면 손해니까 당선되면 국고보전 받으니까 전부 한다는 것을 상정해 가지고 방송시간은 얼마를 잠식하겠으며 방송에 대한 매출비용은 어느 정도 되겠는지 그 계산표를 놓고 하십시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해 봐야 방송사들이 설득 되어질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수치를 갖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그런 자료를 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실제 선거를 치를 때 후보자들이 부담했던 비용이 방송연설과 관련해서 얼마가 나갔는지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 앞으로 예상되는 것도 추정할 수가 있고 또 감액했을 때 세이빙(Saving)되는 비용도……

○張誠源 委員 그런데 협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어요. 지금현재 방송사들이 정규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안에 들어가려면 방송사들이 편성을 대대적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방송사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광고료도 엄청납니다. 거기서 아무리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엄청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본에서 NHK 방송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요. 평소 정규방송시간에는 선거방송을 안 해요. 정규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을 잡아가지고 “이것은 선거방송시간입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도 그렇지 않아요? 평일 정규방송이 시작되는 시간이 다르고 주말 정규방송이 시작되는 시간이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거기간 중에 방송사들이, 선거방송을 해 주는 방송사들이 본래 편성된 정규방송을 하기 전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과 송출료만 부담을 하고 해 주어야지,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부담이 엄청납니다. 내가 얼추 계산해 보면 수천억 되어요.

○천정배 위원 그런데 그 경우에, 서울인 경우는 현행 46개인데 거기에 평균 서너 명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200명은 될 것 같아요. 200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200명이 연설을 얼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10분.

○천정배 위원 10분이면 몇 시간 걸립니까?

○張誠源 委員 요일별로 다르니까……

○천정배 위원 그것을 선거기간 내내……

○원희룡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KBS 같은 경우는 사실 후보자 개인 방송연설은 불가능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후보자 간에 공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돈을 내고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지역구만 준다는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후보에게만 준다는지 아니면 이것을 가격경쟁을 붙여 가지고 한다고 하게 되면 선거법의 원칙 조항에도 어긋나는……

○천정배 위원 공정하다는 것은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것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필요 없고 더구

나 이 비용을 아까 총액선거비용한도 내에서 자기가 프렉시블(Flexible)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같은 지역구에서 나오는 어떤 후보는 나는 방송국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후보는 안하겠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었으니까 형평의 상실문제는 없겠지요.

○유시민 위원 그런데 2분만해도, 10분하고 2분 짜리 광고료를 주어도 광고비 액수가 벌써 8000, 9000만 원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천정배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張誠源 委員 돈을 제대로 주고 하려면 안돼요.

○천정배 위원 그래도 개정안 자체는 맞을 것 같은데요.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광고비용의 2배 까지 주는 경우이니까요.

○원희룡 위원 지금 정확한 계산표를 놓고 그리고 과연 현실적으로 KBS나 MBC같은 경우 방송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놓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방송사들한테 손실부담을 지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것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대충……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알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방송위원회 의견도 매우 논리적이 못한 것 같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것은 회원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는 받던 대로 받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도인데 MBC는 아마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MBC는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BS만 일 것이에요.

○천정배 위원 그런데 지난번 방송 기사입니까? 기사심의위원회에 MBC가 추천한 사람이 한 명 들어가던데요?

○유시민 위원 그것은 주요 방송사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천정배 위원 공영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유시민 위원 공영방송인데 소유구조가 직접적으로 국가소유는 아닙니다.

○원희룡 위원 방문진……

○**천정배 위원** 어쨌든 방송연설은 공영방송이면 강제적으로 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마는 개정안 자체는 상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0페이지, 이것도 선관위에서 준비를 했는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것은 간단하게 자세한 것은 참고해 주시고 참고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천정배 위원** 10페이지부터 아닌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10페이지부터인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하나 해 놓은 것이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희룡 위원** 차근차근 하십시오. 정리를 선관위에서 한 것입니까?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원희룡 위원** 선관위에서 설명을 하시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10페이지부터인데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문대비표 12페이지는 생략하고 13페이지 제13항입니다.

제13항에 보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작성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함께 동봉하여 관할구역안의 매 세대에 발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후보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1. 재산상황

신고대상자의 각 재산총액과 재산의 항목별 각 소계

2. 병역사항

신고대상자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비공개 요구자의 질병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세·체납실적 연도별 납세액, 연도별 체납액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량 및 확정일자

51 직업·학력·경력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게재되 구체적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예시문을 규칙으로, 서식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예시문을 15페이지에 해 놓았습니다.

○**천정배 위원** 마지막의 ‘구체적 사항’은 5호 직업·학력·경력에만 걸리는 것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재산이나 병역 같은 것은 규칙으로 안 정해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규정된 것인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1호부터 4호까지는 그 정도면 구체적으로 다 기재된 것 아닌가요?

○**천정배 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소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100페이지짜리로 써서 내면.....

소명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지요?

○**원희룡 위원** 후보자 등록 시.....

○**천정배 위원** 현실적으로 후보자가 등록하면서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선관위가 그것을 가지고 송부할 자료를 작성하고 그 초안을 당해 후보자가 본 상태에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소명을 할 것 아닙니까?

또 소명뿐만 아니라 잘못 적었다면 이의신청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적절하면 선관위는 이의를 받아들여서 고쳐야 될 것이고 또 적절치 않으면 아닌 대로 소명서를 붙여서 송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절차가 여기에 다 규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소명을.....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滉** 맞습니다. 5호의 단서가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천정배 위원** 글자 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항목별로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것인지 등등을 다 해야겠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15페이지 표를 보면 이것을 선관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가 만들어서 선관위에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할 때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기가 소명한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정배 위원** 이것을 후보자에게 하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선관위에서는 낸 서류와의 일치 여부만 보겠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이것을 선관위가 만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아예 후보자가 만들어서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있을 경우 왜 체납이 되었는지 사유서를 자기가 써 내는 것입니다. 95년도에 재산세를 체납했는데 그때는 내가 외국에 갔기 때문에 체납되었다든지,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렇다면 선관위가 우선 그것을 심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라는 것이 자의에 의한 심사는 아니더라도 과연 그 서류에 의해서 사유서를 썼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때 하는지 사후에 하는지 모르지만 경쟁후보 쪽이나 유권자 중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실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도 이의제기의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희룡 위원** 제가 볼 때 제3자의 이의는 허위 사실 문제가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본인이 작성하도록 하면서 소명도 함께 하도록 하고 선관위가 사후심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선관위가 작성을 하고 본인한테 이의신청기간을 이틀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본인이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처분문서들이 다 있는데 본인이 낸 것을 고쳐라 말라 실랑이하는 것보다는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선관위로서는 소명서를 낼 때 같이 내도록 하기 위해서…… 개개 서류를 가지고 계시다가 등록 신청을 하시거든요. 본인이 떴은 서류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역을 기재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부분, 오해가 될 부분은 소명을 해서 같이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더 낫고 선관위는 다만 개개 서류와 기재사항이 맞지만만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안 맞는 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보완하는 절차를 밟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희룡 위원**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불리한 사실을 누락시켰다든지 표현을 처분문서의 표현과 달리 애매하게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아예 안 받으니까, 아니면 직권으로 정정해서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후보자들이 내는 서류들의 예시가 구체적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객관적인 사실들만 기재가 됩니다. 그 중에서 발췌해 가지고 선관위가 서식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서 일단 후보자한테 보여 준 다음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지금 본문에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앞의 설명서에는 당사자가 소명서를 내는데 규격은 규칙에 위임해서 한 면에, 네 가지 중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거나 네 가지를 다 쓰고 싶으면 그렇게 써서 한 면에 채워 내도록……

그러니까 일단 선관위가 작성해서 후보자에게 보여주고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것만 보내고 이의가 있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소명서를 한 면에 채워서 내면 그것을 같이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가 작성하는 것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본문 표현은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13페이지의 제13항을 보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재된 인쇄물을 작성하여”, 이 말로 보면 선관위가 작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제 생각은 우리 위원회가 부담지기가 어려우니까 후보자가 작성해 오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사무실에서 이것을 작성하면서…… 저희가 저녁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깊이 있는 논의를 못

하니까 그때그때 논의된 것을 사무실에 보내면 윗분들 간에 다 논의가 되어서 자료가 오거든요. 사무실에서 작성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시민 위원 서류를 다 받아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를 여기에 요약해서 적는데 적는 과정은 선관위가 하고 다 적으면 후보자에게 보여주고 후보자가 혹시라도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정정해 주어야겠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유시민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소명할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만 보내고 나는 이중에 찝찝한 것이 있으니까 소명을 해야겠다 하면 A4 용지 한 쪽에다가 소명 기회를 준다, 그런 취지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그런데 지금 이 조문대비표에는 충실히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유시민 위원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천정배 위원 그런 절차도 더 들어가야 되겠고 이보다는 훨씬 더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張誠源 委員 그런데 지금 후보자 등록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부 본인이 내는 것 아닙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그렇습니다.

○張誠源 委員 선관위가 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내는 것이고 본인이 낸 서류를 바탕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張誠源 委員 그러면 소명이 아니지요? 본인이 낸 서류인데 무슨 소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 표를 선관위에서 작성했는데 잘못 작성했다고 하면 정정자료이지 왜 소명자료예요?

○유시민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료의원 중에 절도, 공문서 변조·동 행사,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여러 개의 전과를 가진 의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징역 얼마 받았다고 이렇게 쓰여지면 사실관계에는 100% 부합하지요. 그것이 각 가정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은 남의 것 훔치고 공문서도 막 바꾼 사람으로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과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면 1980년대에 노동조합운동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했으면 취직을 안 시켜 주니까 친구 주민등록증을 가져다가 자기 사진을 붙여서 변조해 가지고 취직했던 말이에요. 그랬다가 파업이 일어나고 잡혀가서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행위와 문서에 나타나 있는 전과 기록 사이에 일치가 있습니까?

군 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못 간 경우 질병으로 인한 면제, 가사로 인한 면제라고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왜 군에 안 갔는지 또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후보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것을 보내는 것인데 문서에 나타난 죄명 또는 병역 필·미필의 사실만으로는 이것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張誠源 委員 그러면 소명자료를 선관위가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요. 아닌 말로 소명자료를 엉터리로 제출하고 선거가 끝나버리면 그만인데, 선관위가 소명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정배 위원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소명하게 하고 그것이 허위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에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야 있겠네요. 그러면 이미 선거의 당락에 관계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선거기간을 줄임으로써 그런 일들이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선관위가 뒤에라도 이의신청이 되면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을 투표장에 게시하는 제도는 지금도 있는 것 아닙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천정배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허위로 소명했다든지 하는 것을 밝혀내서 유권자들에게 공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전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張誠源 委員 없지요.

○천정배 위원 그것은 선거기간이 단기간임으로

써 발생하는, 사실은 고유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인식은 옳은데 완벽한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러니까 유시민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보가 가공됨으로써 그런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재산 등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을 각 가정에 송부하면 너무 많으니까 현행은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볼 사람은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선관위에서 가공해서 보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선거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명의 기회도 없고 까놓고 얘기해서 일부러 거짓은 아니지만 써놓고 누락되어 버렸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천정배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4페이지를 보면 병역사항 마지막 부분에 ‘병역처분사유(비공개 요구자의 질병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비공개 요구자가 누구입니까? 병역처분 사유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후보자나 대상자가 있을 경우 질병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뜻인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현행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이 부분은 아주 머리가 좋아야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 점은 참고해 주십시오.

대체로 큰 취지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꼭 후보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과는 조회해서 뒤에 날아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시간이 늦어서 그 사항을 반영하기는 어렵겠지요?

후보자가 후보등록 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선관위가 재산상황 등 이 항목에 따라서 작성하고 그 문서를 후보자가 특정 기간 동안 초안을 열람하고 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명할 사항이 있으면 소명하고, 소명은 몇 자 이내로 한 다든지 항목별로 한다면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정요구인 경우에는 선관위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실을 반영해서 정보지를 만들어서 매 세대에 송부하도록 하고 송부한 다음 소명내용에 허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재 있는 제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도 선거공보나 이런 데…… 허위사실이 있을 때 따르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석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게 하려면 본인에게 적어내라고 해야 합니다.

○**천정배 위원** 지금 제가 정리한 대로 제도를 만들기로 하고 이런 취지가 명확하게 들어가도록 더 세부적으로 조문을 만든 다음에 본다는 정도로 넘어갈까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집에 앉아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못해서 이의신청기간도 누락되고……

○**원희룡 위원** 번거로운 것은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하기로 합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자꾸 원점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최대한 절차를 세밀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그런데 만약 선관위가 작성하더라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낸 소명서에 대해서만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나온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좀더 검토해서 정확한 조문을 내 주십시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본인이 할지 선관위가 할지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나 구제방법, 처벌이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양쪽으로 다 제도를 마련해 보시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알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식에 나와 있는데, 1999년도 납부세액과 체납세액 두 난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조세법 등에 비추어서 분명합니까?

이를 테면 특정연도에 소득세가 100만 원 나왔는데 그 중에서 80만 원은 납부하고 20만 원을 체납하면 각 난에 '80', '20'이라고 쓰면 되는 것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만약 20만 원을 체납했다가 2000년도에 20만 원까지 포함해서 납부했으면 2000년에 납부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전액 다 납부한 것으로 됩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체납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한번 체납하면 후일 납부하더라도 체납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기에 기재되는 것인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그런 사유는 소명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원희룡 위원 그것은 세법에 따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무적인 문제이긴 한데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항목별로 하기로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세히 항목별로 들어가 주어야 되겠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현재 세법상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를 테면 2003년도 납부세액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인데 사실은 2003년도분 소득세는 올해 5월에 확정 신고 납부하지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납부하게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2003년도라는 것은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정리가 되겠지요. 2002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여부를 2003년도에 적게 되겠군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천정배 위원 그런 것들이 세법상 명료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증명서를 떼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서대로 기재하면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張誠源 委員 14페이지 '……하는 때에 함께

동봉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 세대에 발송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가 되어야지요.

○유시민 위원 지금 선관위가 자신이 없어요. 이것을 '하여야 한다'로 하면 법적으로 선관위가 무조건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면 검토한 후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약간 위험성 때문에…… 왜냐 하면 혹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 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신중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런데 세금 문제는 상대방 후보가 세금을 냈는데 안 냈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양식에 체납액을 적을 때 실수로 실제 세금을 냈는데 잘못 기재했다면 허위서류가 제출되어서 본인이 쓴 것을……

○원희룡 위원 세무서에서 증명서를 떼서 제출하고 본인이 작성하면 선관위가 대조해서 직권정정을 해야 할 것이고 선관위가 작성했으면 본인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런 부담이 있다면 차라리 선관위가 작성하는 것이 낫겠네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그런데 소명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확인을 해 주는 과정을 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희룡 위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 선관위가 작성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책임을 물을 때 책임을 덜어 주는 면이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해도 균형만 맞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誠源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류작성상의 문제인데, 자기가 낸 서류에 맞추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도록 하고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내놓은 서류와 이것이 맞는지 대조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명 같은 것을 미화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증명서에 의해서 나온 그대로 기재하도록 하면 됩니다.

○원희룡 위원 공문서에 의거해서 작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약간씩 비틀어 가지고 뭐가

뭔지 알아볼 수 없게 하면 안 됩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그것에 대한 소명은 별도의 소명서가 있으니까요.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가 작성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써와라 이렇게 한다가 해서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봐서 확정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다음은 참고자료 6페이지 ‘회계장부 보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보존연한이 3년인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최소 3년으로 함이 상당하다’, 최소 3년이라는 것은 범죄 이후 3년이라는 뜻인가요?

○권영세 위원 최소 3년이라는 것은 공소시효 기산의 대원칙이 행위종료 시로부터니까 아마 행위종료 시로부터 3년이 아닌가 싶은데……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법무부는 이쪽의 논의사항에 맞추기보다는 지금 보존기간이 선거일로부터 3년이니까 선거일로부터 3년간……

○천정배 위원 선거일로부터 3년이 아닐 것 같고,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예컨대 3년의 보존 의무가 있는 문서를 1년 만에 파기해 버렸다, 그러면 일반원칙에서는 파기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권영세 위원 그렇지요.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만약 3년이라고 해 놓는다면, 행위 시로부터 3년이든 범죄발생 시로부터이든 어쨌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른 그로부터 3년이어야 되겠지요. 선거일로부터 3년이 아니고…… 선거일로부터 3년이라면 보존기간 만료일과 공소시효 만료일이 같은 날로 되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고 선거 이후 발생한 일반 범죄에 있어서는 그때로부터 6개월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장부 보존의무는 3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발생 시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를 두게 되면, 6개월 만에 파기를 했으면 사실은 선거 후 3년 6개월, 보존기간 지난 다음까지 공소시효가 남게 되지요.

그런 뜻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3년의 기산점은 선거일이 아니라 범죄행위 시, 범죄발생 시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할까요?

○유시민 위원 그러시지요.

○권영세 위원 ‘행위종료 시로부터 3년’ 이렇게 하지요.

○천정배 위원 회계장부 보존의무의 구체적인 조문은 아시지요? 3년간 보존키로 되어 있는 회계장부 보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시인지 범죄발생 시인지 모르지만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기산점, 공소시효 기산점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를 둔다, 그것은 단서로서 붙여야 되겠지요. 일반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와는 달리……

그러면 이 문제는 합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관위 실무사항 중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의식한 금품제공행위 제한 강화입니다.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는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하기로 했고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는 참고자료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선관위에서 작성했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천정배 위원 선관위에서 정리해 주시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본인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그 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기간 외에도 조례·규칙이 정하는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천정배 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해 보고 구체적인 조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張誠源 委員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한다는 것이지요?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자기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에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상시기부행위가 금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정한 경우 포상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다만 그것도 선거

일 전 1년부터는 금지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선거 끝나고도 약간 금지할 필요는 없나요? 답례행위 비슷하게 선거 공신들을 선거 끝난 다음에 불러다 상 주는 것은 그 다음 선거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 제한이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우 여기에서 제한하는 것은, 선거법에 나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기부행위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단지 예산 가지고 쓰는 문제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정배 위원 예산 가지고 쓰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년부터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천정배 위원 그 외의 선거라는 것은 이번 총선 같은 것을 의미하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천정배 위원 현행법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현행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30일이 적정합니까? 저는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그런데 지금도 선거일이 아니고 선거개시일 기준이거든요. 선거개시일 전 30일부터는 평상시 업무가 거의 마비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권영세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그런 선거에 나갈 경우에는 120일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인데, 저도 개시일 기준과 선거일 기준을 약간 오해했는데 이런 기준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을 ‘선거일 전 47일’이라든가 이렇게 쓰는 것이 친절한 법문의 표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선거 이전 기준으로 쓰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헛갈리니까 선거일은 투표일로 하고 나머지는 선거개시일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덜 헛갈릴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일이 투표일이거든요.

○천정배 위원 선거일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것은 기산점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으로 해 놓으니까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면 47일 전이나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좀 줄이면 44일 전이 되겠군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지금 선거법에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저희 실무자들도 간혹 헛갈립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조정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야지요.

○유시민 위원 지금 권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를 선거구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고양시장이 금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작년 가을에 상을 막 주고 120일 전에 사퇴해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 경우는 이것으로 규제가 안 되잖아요.

○권영세 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선거의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제한을 하고 남의 선거에는 47일이 되었건 45일이 되었건 그렇게 규제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권영세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시장인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다, 그런데 자기 선거라면 120일 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년 전부터 규제를 하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때도 1년 전부터는 규제를 해 주어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의 선거에 대해서 45일로 자르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 선거의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시장 선거에 또 나가는 경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경우나 똑같이 1년으로 끊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유시민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가 아니고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 두어야……

○천정배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년부터 이렇게 하면……

○권영세 위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선거, 남의 선거인데……

○유시민 위원 그래야 자기 선거가 규제되지요.

○천정배 위원 남의 선거의 경우 45일이나 47일 이면 적절합니까?

○유시민 위원 그 정도 해 주지요. 단체장이 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압박해서만 특별한 일 안 하면……

○천정배 위원 이것은 매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원희룡 위원 영향이 많지요.

60일 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유시민 위원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희룡 위원 저는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는 프리미엄을 희생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유시민 위원 저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영세 위원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천정배 위원 15일 정도 더 늘린 ‘선거일 전 60일’로 하면 어떨까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그래 주시면 저희는 단속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원희룡 위원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말고 공직선거로 해 버리자고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장이 도지사 나가든 구청장이 국회의원 나가든, 대통령에 나가든 아무튼 모든 선거에 적용되게끔 단체장을 1년 동안 묶어버리자고요.

○천정배 위원 그러면 남의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로 하는 것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張誠源 委員 이것을 문장만 가지고 보면 ‘그 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빼고 ‘선거일 전 1년부터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보면 1년 전에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상시 적용할 것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상시 금지에는 원래……

○張誠源 委員 상시 금지를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규제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張誠源 委員 됐어요.

○권영세 위원 제가 먼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사항 14페이지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등’ 해서 선거일 전 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기간도 짧으니까 선거기간 내내 금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여론조사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중 여론조사해서 선거기간 내내 흑색선전 비슷하게 하는 식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기간 중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선거기간 내내 공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면서 이의를 제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위원 어제 제가 혼자 있을 때 일단 합의를 해 드렸습시다라는 당에 들어가서 다른 것들은 다 추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당론으로 뒷받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로……

○천정배 위원 그러면 일단 합의했었지만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 놓고……

○권영세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 위원 한나라당은 현행유지 의견인 것으로 해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류로 해 놓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개정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1년과 60일이라는 기준을 정했고 그 밑에 ‘위의 기간 외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이 말이 무슨 뜻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

滉 조례·규칙의 근거를 가진 것만 기부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하는 것은 다 기부행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금지기간에는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금품제공행위를 할 수 있고 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조례나 규칙 정도의 확고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기부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滉 예.

○천정배 위원 그러면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행위, 이를 테면 어느 시 조례에 ‘단체장은 표창을 할 수 있다’든가,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滉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아무 제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표현이 좀 이상한데 위의 기간 외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행위 외에는 기부행위로 본다든 말이지요? 그것을 정하면 괜찮다는 말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滉 예, 맞습니다. 말이 좀 꼬아졌습니다.

○원희룡 위원 조례·규칙에다가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滉 지금 조례·규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의 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동네 온갖 행사에 가보면 표창이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지금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항의를 받으면서도 한 발짝도 양보를 못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조례·규칙까지 풀어주었을 때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전에는 조례가 들어 있었는데 조례를 넣어 놓으니까 지방의회를 구슬려서 포괄적인 것을 받아낸 다음에 예산을 계속 선심성으로 쓰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빼냈습니다.

그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

할 것이냐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례·규칙에라도 걸어서 해 보자는 것입니다.

○張誠源 委員 제가 보기에 빠고 법령으로만 하는 것이 좋아요. 조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이것이 이 기간 동안은 법령에 의해서 철저히 규제가 되는데 이 기간 외의 것도 좀 규제를 해 보자는 뜻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張誠源 委員 이것은 풀어주는 것이지요.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인데 1년은 위의 것이 적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3년은 조례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안 된다고요.

○원희룡 위원 이렇게 합시다.

포괄조항 때문에 사실상 빠져나가는 문제니까 ‘조례·규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포괄적인 합법화를 막을 수 있게끔 단서를 답시다. 그러면 어차피 조례는 시·지방 의회가 규정하는 것이니까 단체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결국 단체장 자신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위 공무원들보고 “왜 이렇게 엄격하게 했어. 이것 다 풀어” 이렇게 나갈 테니까 규칙을 빼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알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규칙을 빼고 조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경우 외에는 ……

○천정배 위원 조례로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를 정하자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 봅시다.

○원희룡 위원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수재의연금 주는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지방의회를 설득해야만 수재의연금, 재난 기타 위로금품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수재 나면 구청장 명의로 라면 박스 다 돌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엄격하게 하십시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滉 예.

○천정배 위원 앞으로는 상장을 주는 일은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다 부상을 붙이는 행위는 매우 어렵게 되겠군요.

○원희룡 위원 현장시찰 가서 봉투 주고 파출소

가서 수고한다고 봉투 놓고 가는 것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천정배 위원 그렇게 정리할까요?

그러면 구체적인 조문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기부행위 금지에 예외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된 모양이지요? 빨리 해 주셔야 되겠어요.

상시 기부행위 금지 예외에 관한 조문뿐만 아니라 아까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도 일부 과태료나 이런 것이 있지만 균형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출구조사 문제인데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선관위 의견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저희가 냈던 의견입니다.

○천정배 위원 보류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시민 위원 민주당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원희룡 위원 한나라당도 당론을 오늘 제시하는 어렵습니다.

○유시민 위원 이것이 당론으로까지 할 정도로……

○원희룡 위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에 가서 보니까 반응이 민감하고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의견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당론을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할 테니까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합시다.

○유시민 위원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라도, 300m는 너무 멀어요.

○원희룡 위원 그런 면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완전히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리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誠源 委員 폐지하자는 데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는 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300m가 너무 멀다면 100m면 될까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실질적으로는 50m……

○천정배 위원 그렇지요. 줄 선 것에서 좀 떨어져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희룡 위원 앞으로는 달라지겠지만 투표소들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100m면 운동장 밖에서 해야 할 것이고 50m

면 운동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그것을 정해 주시면, 사실상 선거범죄가 일어난다고 있기 때문에……

○천정배 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는 1m도 안 떨어진 데도 있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결국 출구조사가 투표하러 들어가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까 봐서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유시민 위원 한 100m로 해 주면 다 학교 밖으로 나가요.

○천정배 위원 현행법도 “300m 밖에서”라는 규정과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50m 정도로 줄이면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만……

○원희룡 위원 일단 100m로 잠정합의를 해 봅시다.

○張誠源 委員 거리를 좁혀 놓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출구조사를 병자하지는 않겠지만 병자해 가지고 출구조사하는 것처럼 가까이 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안 일어나겠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찍고 난 뒤에 하거든요.

○張誠源 委員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악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악용할 여지는 없겠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300m 거리를 두는 경우에도 가까이 와서 선거운동을 해요.

○천정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론기관에 한정된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기관도 아니고 언론기관이에요. 언론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상하네요. 언론기관 아닌 사람들은……

○張誠源 委員 그러면 껄럽은 못 간단 말이에요?

○원희룡 위원 언론기관의 경우는 누구를 찍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없지요.

○천정배 위원 출구조사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희룡 위원 질문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출구조사를 못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위원 선거비밀 침해 때문에 질문 또는 진술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예외조항으로 언론사한테는 300m 밖에서 해라 이것이거든

요.

○**천정배 위원**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고 언론기관에 한해서 출구조사를 300m 밖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원희룡 위원** 300m로 되어 있어서 300m를 쫓아 가려니까 힘들다 이것 아닙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滉** 골목 돌아 나가면 투표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천정배 위원** 그러면 100m로 줄이는 것으로 잠정합의할까요?

○**張誠源 委員** 이 조항이 투표의 비밀보장, 투표의 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조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m로 해 놓을 경우에 충분히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었는지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 100m로 축소하시고요.

○**유시민 위원** 현장에 계시니까 100m면 어때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滉** 투표소와 담장까지를 보통 100m로 봅니다.

○**원희룡 위원** 운동장 안으로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잖아요.

○**張誠源 委員** 제 의견은 그 이야기예요. 거리를 300m로 해 봤을 때도 가까이 오는데 이렇게 거리를 좁혔을 때는 더 가까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투표의 비밀보장이 충분히 되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천정배 위원** 그 점을 결론 내야 되지요.

○**유시민 위원** 현실적으로 멀어서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범법이 일상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규제를 하면 오히려 그 규제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張誠源 委員** 100m가 괜찮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100m로 잠정합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표함의 개함, 이 문제는 왜 보류되었습니까?

○**원희룡 위원** 위원 전원 검사 제도를 張誠源 위원님께서 그냥 두자는 것이지요. 투표함 개함 제도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유시민 위원** 투표함이 한 선거구에 2배로 늘

어나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滉** 그렇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러면 한 선거구에 평균 5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으면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한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함이 나오지요? 그러면 100개의 투표함이 오게 되는데 개표장에서 위원 전원이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張誠源 委員** 제 생각은 현행대로 하더라도 개표의 흐름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개표의 흐름에 영향을 안 준다면 절차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희룡 위원** 현재 개정안에서 위원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거든요. 전원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맡은, 예를 들어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시해야 되는 위원까지 전부 개표함 열 때마다 모여야 되니까 풀어주자는 것이지요. 위원을 배제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위원 1명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張誠源 委員**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투·개표 과정이 투명하고 상당히 선진화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무렇게 투·개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닌 말로 투표함을 붙잡고 죽은 사람도 있고 불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싸워 가지고 우리가 투·개표 과정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허술하게 관리했을 때 거기에서 부정이 일어날 사례는 없겠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니까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滉** 현재는 위원 전원이 보도록 법률에 되어 있는데 위원 전원은 아니되 대신에 개표참관인도 같이 봐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張誠源 委員** 개표참관인이 당연히 봐야지 안 보고 어떻게……

○**천정배 위원** 선관위 생각은 한 사람 이상의 위원과, 개표참관인은 몇 명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滉** 다 보는 것이지요.

○**천정배 위원** 개표참관인 전원이, 그러면 각 당에서 추천해서 나온 참관인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참관은 다 자유롭게 합니다.

○천정배 위원 참관인은 꼭 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안 온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겠지요. 참관인한테는 다 기회를 줄 테니……

○張誠源 委員 여러분들 기본자세에 대해서, 뭐냐 하면 투·개표라는 것을 행정편의주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돼요. 아무리 엄격하다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괜찮겠느냐 말이에요. 잘 판단해서 하시라니까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이 자리에서 속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m 규정처럼 실제 개표현장에서 각 당 추천위원부터 위원들이 집계하는 데 전부 다 포진되어 있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검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집계가 다 되면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상황표와 함께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확인해 가지고 도장 찍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또 투표함 까는 데는 한두 명이 책임지고 맡아서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이것 보다 말고 저기 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張誠源 委員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개표의 흐름, 빠른 개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개표하는 데 전혀 부정이 없다고 자신하시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면 막 한다고요.

실제로 저희 개표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주를 책상 위에다 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놓는지 모르겠는데 인주를 놓고 개표원들이 이것을 막 만지면서 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중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다 치우더라고요.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안 된다는 얘기에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인주를 못 놓게 해야 되는데……

○張誠源 委員 그런데 막 놓더라니까요.

○천정배 위원 일단 이 문제는 그대로 보류하겠습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 굳이 고집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실무적으로 쉽게 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편투표 개표를 하다 보면 투표함이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괄해 가지고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검열해서 “이상 없느냐” 이렇게 하고 다시 제자리 가서……

○유시민 위원 그러면 그냥 하세요.

○천정배 위원 그러면 대체로 인정을 했고 이제……

○원희룡 위원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해서 아까 저보고 오후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문작업은 나중에 하시고, 아까 끝나고 나서 인터넷협회 측과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어차피 인터넷 실명인증을 도입하되 이것이 인터넷 사업자들의 영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든지 접속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회피하고, 대신 실명제를 도입해 가지고 온라인 인터넷상에서도 공명선거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보완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범조문에는 일단 이런 정도로만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범개협안처럼 “인터넷 언론사의 정치·시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내지 인터넷 언론만이 아니라 포털까지 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50대 정도를 염두에 두고, 그러나 50이라는 표현을 법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나 소유자 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다 선거에 관해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포괄적으로만 실명 인증장치를 해 놓고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에다 이런 사이트에서 필요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 이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는 정도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의무를 가진 사이트 뿐만 아니라 정당, 후보자 또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실명 확인을 위해 서면으로 요

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정당이나 후보자나 다른 사이트들은 인터넷 실명인증을 신용정보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만 만들어 주고 이것을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로 해서 유수의 사이트에 제한되도록 하고 만약 그 신용정보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만약 50대 사이트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영업상 굉장히 선전이 되고 여기서 배제되면 영업상불이익이 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한다면 중앙선관위에서 하든 아니면 중앙선관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심의를 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순위 내지 대상을 정하도록, 이것을 50대 이내로 하든 100대 이내로 하든 중앙선관위가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인터넷협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합당한 장치를 만들 테니까 그것을 정하는 시기나 이런 것을 지정해서 통보하는 방법을 중앙선관위에 위임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법에다가 이것을 정식으로 더 특정해서 도입하든지 아니면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는 기간이 좀 있을 테니까 시행하는 데 준비 유예기간을 좀 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전 논의 때 빠뜨린 부분인데 과연 회원 등록하는 것과 실명인증을 거치는 것이 효과 면에서 어떠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 조항에다가 실명인증을 확인해야 되는 사이트 운영자는 고소·고발이 있든지 사이버감시단의 신고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위법내용의 게시물이 올라 왔을 때는 본인한테 “왜 이런 글을 올렸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맞지만 이것은 도용당한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도용에 대해 수사가 들어감과 동시에 사이트 운영자는 그 ID에 대해 게시판에 글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도록 의무조항을 두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이나 아니냐만 심사를 받게 되지만 가명으로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렸을 경우에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이트에 글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면 현재로는 가명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글 쓰는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박탈했을 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이것을 법에다 명확히 해 주면 법을 근거로 네티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면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규정은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조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시지요.

○**유시민 위원** 취지가 좋은데, 저는 이 조문을 꼼꼼히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가 끝난 직후까지 4개월 동안 시행하는 한시적인 기구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湜** 예.

○**유시민 위원** 그런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매월 10일에 한다, 또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원희룡 위원** 그래서 제 안은 이것을 중앙선관위에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유시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앙선관위로 고칩시다. 그리고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법적 규제를 신설하면서 그 신설되는 법적 규제의 적용대상을 규칙에 위임해 버리는 것이 제 법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용대상은 최소한 법에 명시해야 규제의 목적이거나 기본적인 방식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칙으로 할 수 있겠지요.

○**원희룡 위원** 그것은 1항에 상위 50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권한이 아니라 의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위 50위를 별 의 없이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

澁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거업무는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존 합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운영된다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임무가 주어졌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일반적인 법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러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언론사나 관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경우……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澁 관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위원 제가 볼 때 인터넷신문협회나 이런 데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100% 거부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개별 전문가와 선관위, 학계 관계자들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選舉管理官 曹永澁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정당에서도 아마 참여할 것입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위원님, 인터넷 언론사에서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는 정보를 누구한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금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시적으로 개정 의견을 만들어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 인터넷협회 관계자들, 소위 유수의 오마이뉴스랄지 프레스안의 사장들하고 협의를 했고……

○유시민 위원 한시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참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실명제 대상자를 고르는 역할을 맡길 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안 들어올 것 같다는 뜻 아닙니까?

○유시민 위원 예, 안 들어오지요. 지금 이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해서 반대성명을 냈는데……

○원희룡 위원 그것은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반대했던 것이고, 물론 이 논의 자체에서 빠짐으

로써 거부의를 명확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도는 어차피 시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업계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극단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시대에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인터넷 실명제라는 경험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인프라를 쌓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 여부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말고 대신 법을 고치려면 여력이 없을 테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용정보법의 근거조항을 선거법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 조치를 해야 될 1항의 의무를 지는 인터넷 언론사가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요청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해 주고, 정당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신용정보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하기보다 ‘신용정보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적 옵션조항으로 해서 신용정보 조회 요금을 적당히 내면 해 주는 식으로 근거조항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것이 10원쯤 되는데 한 사람에 대해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컨대 정기 방문자가 1만 명쯤 있는 데는 10만 원, 50만 명 있는 데는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것이 쟁점이 되어 가지고……

○원희룡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 조문화를 하나 더 해 주시지요.

일단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기술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술적 조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실명인증으로 인해 허무인 또는 가명, 주민등록번호가 실명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게시판에 글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즉각 삭제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조문화와 관련하여 여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조항 또는 영업에 대한 제재까지 같이 딸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천정배 위원 오전에 매우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더 말씀하실……

○유시민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55개 단체들이 모여서 대책위원회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인데 여기에는 민변, 참여연대, 전국교수협의회 등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성명의 한 구절을 보면 “인터넷 선거계시판 실명제는 이런 모든 정치적 과정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실명제는 전자서명 방식이건 어떤 방식이건 간에 신원 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라고 해서 이미 반대 입장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전문가들을 모아서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규제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50대 사이트를 선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오늘 회의 끝난 다음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한번 구해 보시고, 과연 중앙선관위가 그와 같은 업무를 맡았을 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부여된 임무를 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셔서 다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거기에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방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봐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분들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자기들 스스로의 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엄격한 실명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 기간에 들어가서 리플을 달거나 의견을 개진할 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2단계 정도 수준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도 대부분 회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급스러운 의견이 서로 교환되게 하려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 당시 논의과정에서 기자협회와 언론사 측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 문제는 이 정도로 그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원희룡 위원 지금 제가 다시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참여연대까지 반대하는 것은 다 좋은데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범개혁안에서 인터넷실명제를 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방법만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시민 위원 그러면 일단 통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통화를 해 보셨습니까?

○원희룡 위원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내용은 지금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인터넷실명제라는 본질적인 데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실명제를 합의해 놓고 실명인증장치를 하자고 하니 못 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조금 성토를 했던 것이고 어차피 그것이 지금 계속되는 논쟁이기 때문에 일단 도입하자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견입니다.

○천정배 위원 그 점에 관해서는 오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후에 새로운 자료들이 나왔으니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계속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지나가 버렸는데 조례를 정리해서 기부행위로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법령·조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정배 위원 아닙니다. 원 위원님,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인데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법령에 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보통 때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원희룡 위원 당연한 규정이기도 한데 “법령에 의해서 다음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정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선거일 하루 전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 이 기간 이외에는 법령이 정한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요.

○원희룡 위원 좋습니다. 조문상의 문제였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것은 이미 아까 명백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이 바로 국회의 의원 정수 부분, 그리고 선거연령 부분, 선거구나 비례대표 등의 방법의 부분, 양성평등선거구제 부분 등등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위원 비례대표 제명……

○천정배 위원 비례대표나 지역구위원의 당적이탈 내지는 제명 시에 의원직 상실 여부 등이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유시민 위원 張誠源 위원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천정배 위원 우선 張 위원님이 오시도록 조치

해 주시고……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위원장님, 그 부분을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
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각종 선거운동 방법을 많
이 풀어 주고 있고요. 지금 정치자금 쪽에서 선
거비용 제한액의 10% 정도에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해 주자고 합의를 이미 한 것 같거든
요.

○천정배 위원 10%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천정배 위원 아니요, 예비후보자는 1억 5000
만 원으로 하기로 했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아니요,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
서 후원금을 모을 수 있게……

○천정배 위원 아니요, 1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전체적으로요?

○천정배 위원 아니, 범개협의 안은…… 현행도
그렇고, 국회의원의 경우에 1년에 3억, 그리고 선
거 때 추가로 3억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천정배 위원 그것을 1억 5000, 1억 5000으로
반으로 줄였고, 그러면 그 1억 5000이라는 부분
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선거를 위한 후원금인
데, 그것은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1억 5000 한
도 내에서 거둘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것을 제가
거기에 안 가서 모르지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
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비 후보자가 사실상
여러 가지 선거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인쇄물
도 만들어 놓고,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 홈페이지
운영도 해야 되고, 명함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 제한액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할 것인지, 아
니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유시민 위원 아니, 그것은 한 번도 의제가 나
온 적이 없는데 왜 그것을 지금 꺼내세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왜냐하면 그 부분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비용
의 한도를 정해 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비용

의 제한을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게 하는 것인
지……

○천정배 위원 무슨 비용 말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비후보자로서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
는 겁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천정배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
선 1회 홍보물을 보내기로 한 것에 합의했지 않
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천정배 위원 그다음에 크게 열거나 작게 열거
나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 사무실 여는 것, 사
무실 앞에 현수막 무슨 표지 붙이는 것, 명함 찍
어서 하나씩 주는 것,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를 운영하는 이런 정도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전부 아닙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천정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까 홍보물은 1
회로 제한되어 있지만 인터넷도 어차피 홈페이지
하나만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제한하면 될 것 아
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물론 클 수도 있
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사무실도 하나만 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室指導課長 金容熙
예.

○천정배 위원 그런 것에 의해서, 물론 돈이 많
은 사람은 사무실을 100평짜리를 얻고 작은 사람
은 10평짜리를 얻는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을 몽땅그러서 1억 5000 정
도면 된다고 봐서 지금 1억 5000의 후원금을 건
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원희룡 위원 그것을 1억 5000까지 허용한다고
요?

○천정배 위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유시민 위원 아니, 얼마를 쓰든 그것을 허용
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천정배 위원 정치자금법소위에서 논의하고 있
는 사항인데……

○유시민 위원 이렇게 보셔야지요. 우리가 포지
티브하게 규정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위원 아니, 선거기간 중에는 지금 선
거운동 비용 제한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비후보자에게는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유시민 위원** 잠깐만 정리 좀 합시다.

지금 문제 제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선 선거운동에서는 포지티브 방식 아닙니까? 지금 다 되는데 이것 이것은 안 된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을 해 놓았잖아요? 그다음에 예비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 단계에서는 네거티브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다 못 하고 이것 이것만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지극히 좁은 통로만 지금 예비후보자들에게 열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범위 안에서 제한된 선거운동 방식으로만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무슨 재원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은 후원자들을 모아서 후원금을 얻어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후원금 자체의 액수를 정해서 못 쓰게 하면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100평짜리 사무실을 얻고, 없는 사람은 돈을 모아서 10평짜리를 얻으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규제를 할 수도 없고, 저는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천정배 위원** 이럴 수는 있겠지요. 선관위의 생각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때도 마치 본선 선거운동 비용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때 쓰는 한도를 1억 5000으로 정한다, 그래서 설령 자기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억 5000 이상을 못 쓰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0만 원짜리 사무실을 열면 그것만으로 3개월에 1억 5000을 다 써버릴 테니까 다른 선거운동은 못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규제를 가하자는 발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요. 지금 유시민 위원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성질상 제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논의가 나온 게 범개협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선거운동 기간은 어차피 예비후보자들도 일단 본선으로 들어가니까 선거운동 제한비용 1억 2000

정도를 쓰는 겁니다. 예비후보자는 120일 전부터 허용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 개시기간 전까지 거기에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10분의 1 정도까지 인정해 주자, 쉽게 말하면 한 1200만 원 정도는 인정을 해 주어야…… 돈이 많은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그 범위 내에서만 쓰라는 게 그 취지입니다.

○**천정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비현실적이지요.

○**유시민 위원** 어디서 그런 얘기가 처음 나온 겁니까?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범개협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유시민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현역의원들은 규제가 시작되는 90일 이전에 비용 제한이 뭐 있어요? 없지요?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비용 집행과 관련되어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어떤 제한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신인과 현역 사이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 개정을 하는 것이지, 정치신인 가운데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과 없는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고 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 개정 취지 자체가 현역의원과의 신인 사이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문제가 없는 것들은 문제 제기를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천정배 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원희룡 위원** 예, 좋습니다.

○**천정배 위원**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의원 정수문제하고, 아까 양성평등선거구제 문제가 의원 정수하고 관련되어 있지요?

○**원희룡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방법을 같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의원 정수에 관련된 정수문제하고 지역구 확정과 양성평등선거구제 등의 문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 크게 봐서 의원 정수와 관련된 문제를 토론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우선 張 위원님이 오셔야지……

○**원희룡 위원** 양당의 당론을 들어야 되겠는

데……

○**천정배 위원** 金成基 위원장님이 오신 지 오래 되었는데 시작하려니까 또 안 계시네요.

○**원희룡 위원** 金成基 위원장님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게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전국 단위로 명부를 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견이 접근되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전에는 열린우리당만 권역별 명부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장외회의에서 이게 사실상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듭을 짓고 논의 범위를 더 좁힙시다.

○**천정배 위원** 아니, 그것만 하나 떼어서 논의를 할 수는 없고,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연결된 사항들이니까 한꺼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張誠源 위원님에게 연락해 보십니까?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지금 연락하러 갔습니다.

○**원희룡 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인구 상·하한선을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정해야 됩니까? 지금 현행법을 보니까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73인으로 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희룡 위원** 그다음 선거구의 구체적인 행정구역이 별표로 법에 붙어 있게 되어 있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원희룡 위원**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이의 없이 별표로 붙이게끔 사실상 되어 있는 거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참고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의원 정수의 문제는 일단 국회가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례대표는 지금 전국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더더구나 확정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가 물론 정해졌지만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했을 때는 소선거구제로 뽑히는 지역구의원의 전체 숫자를 정개특위가 일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제시되면, 그게 무슨 200이

라든가 현재처럼 227이라든지 얼마가 되었던 간에 구체적으로 인구 편차 3 대 1 이내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행 지역구 수 227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국 인구를 지역구 수로 나누어서 한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를 정하고 그 평균 인구에다 50%를 가산해서 그것이 상한이 되고, 거기에 50%를 감해서 그게 하한이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227명의 국회의원을 3 대 1 편차 이내에서 획정하기 위한 인구의 상·하한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국회에서 의결할 필요도 없고 자동적으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해야 될 사항은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몇 개 지역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통보하면 될 일이고, 거기에다가 굳이 인구 상·하한선까지 붙여 보내고 싶다면 아까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 붙여서 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행정구역 단위를 만들어서 보내오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정식 입법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위원** 어차피 이게 가장 첨예한 문제인데 일단 제가 전제할 것은, 제가 당론은 따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金成基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選舉區劃定委員長 金成基** 우선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원희룡 위원** 우선 제가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을 보니까 제21조제1항에서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73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제1항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5항에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이 조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역구의원 수를

안 정해 주면 회정을 못 합니까? 회정위원회가 지금 가동을 안 하셨는데……

○**選舉區劃定委員長 金成基**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만들면서 정개특위 활동의 권한으로서 지역구의원 수의 정수를 정개특위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회가 정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합의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로서는 국회가 지역구의원 수를 정하실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천정배 위원** 아까 그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안 정해 줄 때도 하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選舉區劃定委員長 金成基**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지요.

○**천정배 위원** 아니, 원 위원님의 질문은 국회가 지역구의원 수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選舉區劃定委員長 金成基** 기계적인 작업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원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의원 수에 대한 법 규정이 없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합쳐서 273인으로 한다’ 그래서 총수만 지금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회정을 하는 위원회라는 거지요. 그런데 법상 지역선거구 회정이라는 게 권한으로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지역선거구의 숫자는 여기에서 정해서 해야만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에 정개특위에서 숫자를 정해서 넘겨주던 그런 관행이 있고, 또 그런 정치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역구의원 숫자까지도 회정위원회에서 회정을 하라는 정치적 합의가 있다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까?

○**選舉區劃定委員長 金成基**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별표로서 정하는 것은 역시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하실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법률상으로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선거

구획정위원회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0명이든지 300명이든지 마음대로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그런 기계적인 작업을 못 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문기구니까 그 기계적인 작업을 한다는 것이 법률상 어떤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그런 가이드 라인을 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원희룡 위원** 어차피 최종 결정은…… 존중의 무만 있지 그것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選舉區劃定委員長 金成基** 예, 그렇지요.

○**원희룡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숫자에 대해서 국회가 정해 주든지, 아니면 ‘일단 회정위원회에서 숫자에 대한 안을 좀 제시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숫자까지도 위임을 해서 한다면 회정위원회가 며칠이면 구체적인 회정안의 정개특위 제출이 가능합니까?

○**選舉區劃定委員長 金成基** 제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아홉 사람입니다. 그 중에 네 분은 국회의원이시고 다섯 분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신 분들끼리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저는 길게 잡아도 이틀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미 기본적인 조사가 다 되어 있고, 자료가 전부 조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 네 분이 계시고, 따라서 각 정당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위원** 선거법이 개정된 다음에는 회정위원회에 정당 관계자들의 의견 진술권만 주지 의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아예 고쳐 놓고 있습니다.

○**選舉區劃定委員長 金成基** 예, 그것은 맞습니다.

○**원희룡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규칙 때문

에 어차피…… 이것을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選舉區劃定委員長 金成基** 그렇습니다. 의결정족수가 3분의 2입니다.

○**원희룡 위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빠져 버리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정당 간의 합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요?

○**유시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신법의 정신에 따라서 국회의원 네 분이 다 빠지고 다섯 분이 다 하신 다음에 형식적으로 의결절차만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거쳐 주면 되지요?

○**원희룡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정개특위안은 그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정개특위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選舉區劃定委員長 金成基** 그런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권한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돌아온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이든 250이든 그것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 안에 끝낼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선거구 획정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위원** 제가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여쭙어 볼 사항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법조문 자체에 비례대표와 지역구위원을 몇 명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놓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따로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비례와 지역구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사실 정치적 합의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표만 바꾸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법 조항을 보건대 궁극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적어도 정치적 의사결정 면에 있어서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대표들에게 기속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하튼 법 조항에 이 정수가 있건 없건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구획되어 있는, 273명 가

운데 46명을 전국구, 그다음에 227명을 지역구로 해 놓은 것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選舉區劃定委員長 金成基** 인구등가성 문제 때문에……

○**유시민 위원**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서 정당 지지도를 따로 묻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選舉區劃定委員長 金成基**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곤란하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에 있는 선거구 구역표가 위헌이라는 것이지요.

○**유시민 위원** 그러면 이 위헌 상태를 해소하는 길은 선거구 구역표를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選舉區劃定委員長 金成基** 법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유시민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제 의견인데요. 만약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없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손대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위헌 판결이 나고 보니까 어차피 손을 대야 됩니다. 대려고 생각해 보니 인구변동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구 숫자에 손을 대는 게 어떠냐?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선거구 구역표도 결국은 선거법의 일부니까 현행법을 고칠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숫자 또는 전체 의원정수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고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피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의 비례대표 숫자와 지역구 숫자는 그냥 유지하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혹시라도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을 주장하는 쪽에서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 또는 그 변경이 정당한 이유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혹시라도 납득할 수 있는 변경 사유를 제시해 주신다면 받을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 당으로서는 의원정수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인데 한나라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으로 지금까지는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의 시점에서 변경이 불가피한 사

유를 명료하게 정리해서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당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TV 토론회에 나와서 장시간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16대 총선에 비해서 지금 현재 유권자 수가 이백수십만이 증가되어 있고요, 전체 인구가 사백수십만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숫자 같은 것은 획정위원이나 전문위원이 갖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늘어난 인구가 있는 것이고요.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을 보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한다. 분할은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역대표성, 지역대표성은 행정구역이라든가 교통요건, 지세 즉, 지세라는 것은 지리적인 사정을 얘기할 것입니다. 바다 산 강 이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지역대표성이기 때문에 지역으로서 갖고 있는 일체감 이런 부분까지도 최대한 감안해서 획정하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주로 도시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도시 쪽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는 증가하면서도 농촌은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 평균에 의해 가지고 상한선을 올려갈 경우에 가면 갈수록 농촌은 지역대표성에 무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가상 실험을 해 보니까 인구를 11만으로 했을 경우에 크게는 4개의 시·군이 합쳐져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합쳐질 뿐만 아니라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선거구의 통합성에 비추어 가지고 행정구역끼리, 시·군끼리 서로 대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40여 군데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간 여유가 있다면, 1, 2년 정도 미리 공고가 된다면 그에 맞게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다 할 수가 있을 텐데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40여 개의 행정구역끼리 서로…… 지금까지 A라는 군·시를 합쳐서 단일 대표를 뽑던 그 지역이 이제 선거를 90일 정도 앞두고 전혀 다른 인구 구성과 정치적인 컬러와 유권자들의 분포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과 분명히 통합되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농촌지역……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전체 의석의 증감은 별

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당리당략이라고 하고 기득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는 11만, 12만으로 간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40여 개의 행정구역끼리 서로 오고 가라 이것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라는 그런 문제로 줄여질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 25조에 의해 가지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아무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선거법상의 원칙 조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대폭 늘리는 것이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지역구가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안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거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안정성, 예측가능성,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있다는 점, 농촌에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대표성의 확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일단 10만·30만…… 그런데 10만·30만으로 하면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분구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정당이 사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당의 예상 획득 의석수와 관련된 그런 이해관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신 농촌지역의 경우는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들 내지는 선거구를 잘 알고 있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들어봤을 때 지나치게 안정성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한해서는 이걸 감안해서 하자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이라고 하신다면 다음 선거부터는 11만으로 상향해서 간다, 이걸 더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열린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해 봤으면…… 지금 좋은 선거법 만들어 놓고 신인들이 발 묶여 있는데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신인들이 많이 도전하는 정당은 시간 갈수록 불리합니다.

저는 저희 당론을 충실히 대변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접근 내지는 안들이 나온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론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충분히 설득할 각오도 되어 있고 당론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라는 까다로운 절차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TV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당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도 열려 있습니다. 열린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여지를 줘야지 행정구역 대이동 하는 게 한나라당하고 민주당뿐이다, 남의 집 불구경 내지는 싸움 구경하는 게 신난다 이래 가지고 그냥 지켜보시는 입장이라면 결국 토론을 통한, 대화를 통한 접근이라는 게 힘든 게 아니냐? 왜 그 점에 대해서 안 열려 있느냐? 열린우리당 진짜 열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시민 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천정배 위원** 잠깐만요, 원 위원님 말씀 마치셨습니까?

○**원희룡 위원** 예.

○**천정배 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한두 가지 설명을 구하고 오늘 제 의견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결론은 지난번에 유지하셨던 당론, 그러니까 227석에다가 플러스 16석을 해서 243석입니까?

○**원희룡 위원** 243석 플러스 30석입니다.

○**천정배 위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제 이해관계는 아니지만 제 지역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만·30만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지난번 논의에서 대개 10만·30만이고 인구 기준을 작년 3월 말……

○**원희룡 위원** 아닙니다. 인구기준에 관해서는 작년 3월이 아닙니다. 법에 의하면 최신 인구통계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법대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6구가 늘어난다고 정리해 놓았는데 제가 그때 알기로는 제 지역구인 안산 단원구의 경우에는 분구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희룡 위원** 저는 구체적인 표는 모르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이 논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3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인구 기준의 10만·30만이나, 아니면 지역구 의석수로서의 243석이나 하는 것이 서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물론 그렇지요.

○**천정배 위원** 16석을 늘려서 243석으로 한다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입장인가요?

○**원희룡 위원**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243석이다?

○**원희룡 위원** 243석 플러스 30석, 273석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깐 그것은 건드리지 못하고요.

○**유시민 위원** 그것도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약간 불미스러운 상황이 정개특위에 있었을 때 그때 나온 안이 플러스 16석입니다. 이 플러스 16석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2003년 3월 31일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할 때 16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최신 인구통계를 쓴다면 해 바뀌기 전까지는 9월 말이나 10월 말 통계였고, 지금 이렇게 되면 12월 말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16석이 될지, 17석일지 18석이 될지, 10만·30만으로 하게 되면 정확히 여기에서 따지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원희룡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숫자보다는 인구에 기준을 둔 주장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 줄 수도 있고 하나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둘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30만의 인구기준을 원칙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수를 확정하고 지역구 의원수가 증가하는 만큼 총 정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니까 비례대표는 30석이 될 수도 있고 28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희룡 위원** 어차피 말씀하시니까, 지금 선거법 제4조(인구의 기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호남의 특정 지역구를 하기 위한 무슨 맨더링인가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저희 한나라당의 입장은 작년 3월로 해야 된다고 봐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갈렸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설, 9월설, 12월 말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법 규정대로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이게 현재 우리 정개특위 선거법소위의 의견이고, 지난번에 3월 말 기준이 왜 나왔는가 보았더니 선거구확정위원회의 규정에 보니까……

○**유시민 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원희룡 위원** 1년 전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어겨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산점을 소급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의석수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행정구역의 설정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자위에 계시니까 5만 넘으면 시로 되어 있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시로 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이라고 그러면 시 2개가 합쳐지는 이런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상 시 또는 군·구 이렇게 나누고 행정단위가 승격되는 것도 전부 인구단위로 5만, 10만……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인가요? 이런 식으로 단위가 딱딱 잘라지게끔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 편성과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안정성도 최대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10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시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희룡 위원님의 당론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우선 인구 기준일을 최근 인구통계로 해주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전적으로 이의가 없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로 유력하게 논거를 드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4년 동안의 인구 증가 때문에 지역구 의원정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이유, 그다음에 좀 특수하게는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농촌 쪽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구기준을 높이 정할 경우에 농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취약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 주 논거인데요.

그런데 만약 유권자수의 증가가 문제라면 저는 총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정원을 묶어 놓은 가운데 지역구 의원을 늘린다고 해서 유권자 수의 증가를 반영하는 변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례대표도 전국을 선거구 단위로 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뽑은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의원정수를 좀 늘리자 이렇게 주장하신다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농촌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된다는 것인

데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한나라당 측에서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야당 측에서 지나치게 한 측면을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각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각급 정부 또는 각급 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굉장히 다채롭게 열려 있습니다. 시골 같으면 지금 문제가 되는 데는 대개 군일 텐데요. 군의회도 있고 군수도 직접 뽑고 또 도지사도 뽑습니다. 국회의원이란 것은 대통령까지 주민들이 선출하는 여러 단계의 지방정부의 책임자와 지방의회 책임자들 중의 하나에 불과해요. 옛날처럼 지방자치선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같으면 그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는 공직자가 국회의원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도지사도 챙기고 군수도 챙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압도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선거구가 통폐합됨으로써 혹은 조정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이런 것도 국회의원 뽑는 데 별로 혼란될 게 없습니다. 갑자기 시·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군의 조합이 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혼란이 일어나거나 생활상의 변화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4개 군 정도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현상이냐 하면 이미 아니에요. 지금 227개의 지역선거구 가운데 약자로 해서 너자씩 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속·고·인·양, 속초·고성·인제·양양 4개의 시·군이 한 선거구로 4년 동안 지내 왔고 음·진·괴·중, 음성·진천·괴산·증평…… 한 10년 전에는 음성·괴산이 한 선거구였지요. 지금은 이미 이 4개 군이 한 선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곳이 몇 개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야당만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구 증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 당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당 정책위 의장의 선거구도 없어지게 되어

있고 거기도 무주·진안·장수 3개 군이 기존에 한 선거구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도 여하튼 간에 없어집니다. 하나를 찢어서 붙이든가, 하나를 더 붙이든가 해야 돼요. 태백·정선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두 개를 찢어서 다른 데 붙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인접한 데는 또 4개 군이 합쳐지거나 3개 군이 합쳐지는 데가 생길 텐데 이런 것이 지역구 의원을 증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느냐 할 때 일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굳이 지역구 의원수를 증원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더군다나 이것은 사실상 현재의 판결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법 협상 7차 회의까지 하면서 선거법소위에서 많은 내용을 고쳤고, 저는 의원정수 문제보다도 이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정수 문제는 국회의원 10명 더 있으나 덜 있으나, 지역구 의원이 10명 많으나 적으나 사실 이것이 국민복과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싸울 만한 일이 못 됩니다.

그런 전제에서 제가 중국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지역구 정원의 여러 가지 사유 이런 것들이 폭넓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면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지역구 의원정수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정수를 지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서…… 동결이라는 것은 특정한 입장이 아닙니다. 동결이라는 것은 이것을 변경해야만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4년 전에 기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과거의 합의대로 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제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언론기관에서도 주로 이 문제를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을 더 많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보도보다는 오히려 의원 정수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 이런 것이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합의의 도출이 어렵다면 과거 4년 전에 정치권이 이루었던 합의를 그대로 지키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취지를 살려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천정배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먼저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진지한 토론을 계속하는 중이니깐 두 분이 원 없이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당의 유시민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지만, 두 분이니까 두 분이 그냥 더 토론하시고……

○**원희룡 위원** 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저 개인 의견으로는 이것을 풀기 위한 많은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논의하자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논의 내지 토론을 하자면 사실 끝도 없을 텐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열차에 실을 정도로 선거법 개혁안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출발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각 당에 의해서 풀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현재에서 중요한 것은 당론 확인 그리고 당론의 변경 또는 협상의 여지가 어떻게 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실제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지난번에 KBS에 가서 실컷 토론했던 문제를 여기에서 또 한들, 지금 우리가 토론 백일장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의 쟁점이나 근거, 서로의 형편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민련, 민주당의 당론도 오늘 공식으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의 당론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되 가급적 빨리 협상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보자’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은 일단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천정배 위원** 좋습니다. 생산적인 의견이고요.

○**유시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민주당하고 자민련 당론을 현행 유지로 이미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변경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난번 회의에서 이미 두 당의 경우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원희룡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당론을 가지고 당에 가서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식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훈령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만약 유시민 위원님이 한나라당 운영위원회에 가서 설득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시키고 싶은 입장인데…… 어차피 정당이란 게 결국 무리를 이루면서 해야 되는 거고, 당론을 형성해서 해야 표결도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예, 그 점을 감안해서 내일 논의하기로 하고요.

○유시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299명으로 의원 정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제안을 저희가 했는데요.

○원희룡 위원 당론입니까?

○유시민 위원 예, 당론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여성전용선거구제, 그러니까 여성의 의회 참여를 대폭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6개의 여성전용선거구를 전국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의원 정수 26명 증원안을 지난번에 냈거든요. 기왕이면 당에서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이 제안에 대한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랄까 이런 것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알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내일 오후 2시로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아까 李在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자금법소위에서 약간……

○원희룡 위원 회의를 이번 주에 한 번 하십시오.

○천정배 위원 먼저 전체 회의 일정을 확인하고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李在五 위원장님이 “오후 2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 가지고 각 소위별로 그동안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일단 내일 전체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데는 다 좋다고 하는데 정치자금법소위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제가 중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최종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李在五 위원장님하고 그쪽하고 조금

절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럼 오늘 회의 끝나고 간사 간접촉도 해 보고 위원장님께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내일 오후 2시에 전체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다시 소위를 열어서 오늘 이 토론도 더 하고, 조금 미진한 것들을 더 한 상태에서 오후 회의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이 상태에서 일단 소위를 중지하고 내일로 예정돼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전체 회의를 기다려 보고 전체 회의가 열린 다음날인 모레 한다든가……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토요일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것은 내일 오전에 회의를 열 것인가 하는 여부만 결정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그것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의원 정수 빼고는 거의 다 합의가 되고 바로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는데 조문화 작업하고 나서도 아마 또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의원 정수라는 문제는 사실 총수를 안 건드리면 법 개정할 일이 없습니다. 별표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문화하고 축조심사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 정수가 결론이 안 났다고 해서 조문화를 늦추거나 전체 회의 상정을 늦추지 말고, 이것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병행해서 진행하고요. 전체 진도가 늦어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2차 소위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소위 심사는 이것으로 마감하고, 일단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고, 내일 전체 회의가 열리면 소위 심사 결과가 조문화는 안 됐지만 내용적인 합의사항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요. 그럼 아마 다음주는 연일 사실상 전체 회의에서 조문을 놓고 하나하나 확정시켜 가는 심의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정배 위원 유 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일 오전 중이라고 하면 10시에 해도

사실상 크게 일을 못 하고 회의를 끝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유시민 위원 좋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럼 일단 오늘의 소위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이후 전체 회의 일정을 살펴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조문화하는 작업 등등을 위해서 다시 소위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